

기술창업보육실무



본 교재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교재이며 표준교재와 관련한 내용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음

CONTENTS



- I. 창업보육센터의 이해
- II. 창업보육센터 기능과 운영시스템
- III. 창업보육센터장과 매니저
- IV. 창업보육 관리단계



I. 창업보육센터의 이해

1. 창업보육센터 개념

2. 국내 창업보육사업의 발전과정

3. 해외 창업보육사업 현황

가. 창업보육센터의 정의

- 창업보육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부족한 경영 능력과 자원 지원으로 창업적 재능을 보완하고 창업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촉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 7항 의거,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사업장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범용기기 및 작업장 제공·기술 및 경영지도·자금조달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수행 기관
- 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보육(Incubate)으로 배태 조직임. 새로운 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적절하고 통제된 조건을 유지시켜 주는 ‘창업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음.
-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신생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을 입주시켜 제반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생 중소기업의 생존율 및 성공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
- 창업보육센터 운영 목표는 기술혁신 결과의 실용화 촉진, 신사업 창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술인력 양성,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기능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창업보육정책의 일환임.

[창업보육센터 정의]

저자	정의
Plosila & Allen(1985)	- 창업보육센터는 이익추구기업의 초기 단계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
Allen & Rahman (1985)	- 창업보육센터는 임대공간, 공유 사무실 서비스 및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초기단계의 성장을 돕는 시설
Smilor & Gill (1986)	- 창업보육센터는 새로운 회사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재능, 기술, 자본을 연결하고, 노하우 추구
Allen & Bazan (1990)	- 창업보육은 네트워크 또는 조직의 기술, 지식, 동기부여, 임대, 사업의 제공 및 공유서비스를 제공
Allen & McCluskey (1990)	- -창업보육은 새로운 벤처 생성, 초기 단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저렴한 공간, 공유 사무실 서비스 및 비즈니스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Hughes Et al. (2007)	- 창업보육센터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벤처기업을 수용하는 시설
Exhun (2009)	- 창업보육센터는 공식적으로 신제품,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획득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여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제공 - 창업보육은 신제품,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및 관리 과정
K Business Incubation UKBI(2009)	- 창업보육은 개발과 변화의 초기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개발프로세스의 인프라와 네트워킹의 유연한 조합
American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NBIA(2010)	- 창업보육센터는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및 신생 회사의 성공적인 개발을 가속화하는 비즈니스 지원 프로세스임 - 주요목표는 재정적 생존과 자립, 성공적인 기업을 생산하는 것,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신기술 상용화, 지역 및 국가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출처 : Theodorakopoulos et al.,(2014) What Matters in business incubation? A literature review and a suggestion for situated theorizing,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나. 창업보육센터 유형

- 창업보육센터의 유형은 설립 및 운영주체, 보육대상의 특성화 여부, 지리적 위치, 운영방침 등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①]

구 분		특 성
기준	유형	
설립 및 운영 주체	공공 및 비영리단체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설립 · 경제의 다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표 · 고용 창출 및 과세 대상의 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및 연구 기관이 설립 · 연구 결과의 상업화 및 기술 이전 · 사업화 결과에 따른 대학 재정 수입 강화 · 지역 사회에의 기여 및 대학(연구소) 이미지 제고 · 연구 기회 부여 및 실질적인 산학 협동 · 소속원 및 졸업생에게 창업 기회 제공
	민간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민간기업이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 운영 · 영리 추구 및 기업의 구조 개편 등이 목적 · 신기술 확보 및 기술 이전에 투자, 부동산 개발 목적
	민간/공공 합작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대학 및 공공단체 등에서 공동 설립 ·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 및 민간 전문기술과 자본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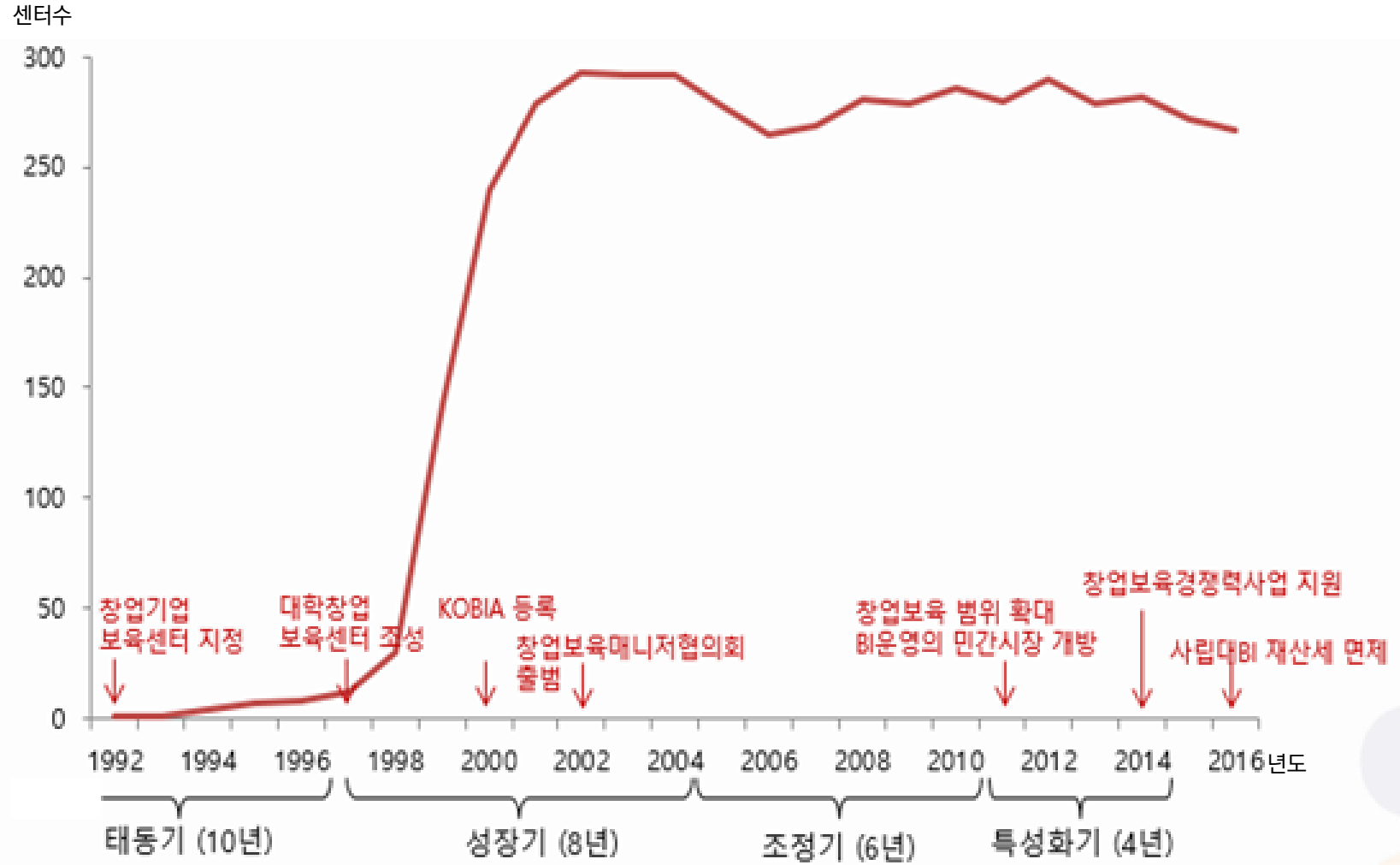
구 분		특 성
기준	유형	
특화 여부	특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해당되는 전체 입자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중소벤처 기업부와 협약에 따라 전체 보육실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보육 지원 ·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서비스를 특화(Post-BI) · 지원 인력의 해당 업종 전문가 확보 필요
	비특화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복합형 보육 · 전반적인 경영능력을 보유한 전문경영인 확보 필요
지리적 위치	대학(인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축적된 인적 자원, 기술 및 설비 활용 ·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에 적합 · 연구 결과의 조속한 사업화 가능
	도시지역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설비 등 물적 자산에 접근 용이 · 시장 근접, 마케팅 활동 유리
	농촌지역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의 자원 획득 유리 · 입주 공간 사용료 등 고정 경비가 상대적으로 저렴
운영 방침	자립운영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설립 목적에 충실한 운영 정책 시행 · 지원 서비스의 전문화, 특화 운영 가능
	비자립운영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지원기관의 정책 반영 · 운영기관의 이익 배제로 공공이익 반영

- 국내의 창업보육사업은 1990년 12월 제 10회 창업지원심의회에서 처음으로 『창업기업보육센터 설립·운영지원 계획』이 의결되고, 1991년 11월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업무운용 준칙』의 고시로 법적 근거 마련.

구 분	국내 창업보육사업(BI) 발전과정 ①
창업보육센터 개념의 처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구)생산기술연구원이 산업자원부(현,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을 시초로 봄. - 미국 NASA의 기술이전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상업화에 이르기 까지 창업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외방식의 기술개발지원 성격이 강함.
입주방식의 창업보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3월 설립된 (주)중부산업컨설팅의 영동창업보육센터가 입주 방식의 처음이며, · 최초 민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 시작 · 1994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안산창업보육센터를 본격적 창업보육사업의 시작으로 봄.
창업보육사업의 확산 및 기반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 봄. - 전통산업 중심 → 지식개발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 전환 필요 - 심각한 실업사태로 고용문제 당면과제 부각 · 1997년 3월 경제장관회의 ‘중소기업 창업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대책’ 마련 · 1997년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정 - 법률적 기반 및 정부지원과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기반 마련

구 분	국내 창업보육사업(BI) 발전과정 ②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부터는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 환경부, 국방부 등이 창업보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시작
BI 역할과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12월 BI DB화, 창업안내 망 '창업넷(www.changupnet.go.kr) 구축화 · 2002년 11월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BI 생산형 전환, 매니저 고용 의무화 방안 등) · 2003년 10월 일자리창출 및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 추진 · 2004년 12월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패자부활 제도 도입 · 2005년 7월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사업의 부처간 역할 조정, BI 경쟁과 퇴출시스템 상시도입, BI자립화 등 추진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테크노파크 관련센터 POST-BI로 전환하여 지역 특화산업 유도
제 2의 도약을 위한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2월 고용없는 성장 및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 중기청 '중소기업 창업보육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BI를 지역 산학연 협력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지역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산업 전문 창업보육센터 육성, 원격창업 보육사업 도입, 창업촉진단지 조성, 해외 · 고급인력 전용 창업보육센터 지정 등
선진형 제 3세대 플랫폼 및 제 2의 벤처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8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를 선진형 제 3세대 플랫폼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 'BI활성화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2~7년 인큐베이팅 범위를 예비창업 및 성장단계까지 확장 - BI운영을 민간에 개방, '선택과 집중'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강화 · 최근 5년간 중기부의 정책방향은 창업생태계조성 및 고도화, 창업친화적인 정책, 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 대학발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제 2의 벤처붐 조성으로 변화

[창업보육센터 주요연혁 및 센터수]



*출처 : 고희진 외(2019) 국내 창업보육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자료

- 국내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의 창업정책은 다음과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의 창업정책 변화 ①]

연도	정책방향 및 목적	세부지원정책
2013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외국인 기술창업촉진방안,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2014	창업 생태계 구조 고도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추진방안, M&A 활성화 방안, 우수기술 창업기업 보증기관 연대보증 면제, 전문엔젤제도
2015	통합적 창업지원 정책 조성	사모펀드(PEF) 규제정비, K-스타트업 통합브랜드 출범, 재창업자 재기 지원 방안
2016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방안
2017	대학발 창업활성화 (관계부처 합동)	대학발 창업인재 육성, 대학의 기술사업화 촉진, 현장밀착형 창업교육, 대학창업문화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대, 대학 창업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학사개편) 모태펀드 8000억원 출자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2018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 (관계부처 합동)	벤처생태계 혁신(벤처확인제도 개편),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청년일자리 창업대책 수립, 청년일자리 창업 추경(3.9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의 창업정책 변화 ②]

연도	정책방향 및 목적	세부지원정책
2019	제2벤처붐 확산 (관계부처 합동)	제 2의 벤처붐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 비전을 위한 벤처기업 5조원, 유니콘기업(10년 이하의 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20개 창출, M&A활성화를 3대 목표 설정 →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를 위한 5가지 전략 추진 1. 신산업고기술 스타트업 발굴 2. 벤처 투자시장 내 민간자본 활성화 3. 성장과 글로벌 4. 벤처투자 회수 및 재투자 5.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2020	디지털경제 전환 및 벤처4대 강국	-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스마트공장도입, AI, 데이터기반 제조 혁신 고도화) 및 스마트 대한민국 기반구축 - 역대 최대 벤처투자(4조원),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제 2벤처 붐 실현
2021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 주역화	창업붐+투자붐+수출붐 등 3대붐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 붐' - '벤처투자붐' 프로젝트추진,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신설 -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등 '수출붐' 프로젝트 추진
2022	미래선도 벤처,창업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 확산	기술,청년,지역중심의 혁신 창업활성화 도모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등 청년 창업열기 확산, 창업보육센터와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역 창업 지원기능 강화 - 벤처기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 및 스톡옵션 확산

*출처 : 이우진 외(2017), 벤처창업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가. 국가별 창업보육 현황

1) 미국

- 1995년 미국 뉴욕(New York) 주 바타비아(Batavia) 지역의 ‘바타비아 기술센터(Batavia Industrial Center)’가 세계 최초의 창업보육센터임(빈 건물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함)
 - 1964년 필라델피아(Philadelphia) 지역에 설립된 유니버시티 사이언스 센터에 19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창업보육 산업을 시행함(우수 창업기업 입주공간+보육서비스)
 -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미국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미국 주요 연구 중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기술혁신센터에 자금을 지원함(뉴욕 주의 렌셀러폴리테크닉대학교(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와 애틀란타(Atlanta)의 조지아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 의해 승계 및 운영되고 있음.)현재 NSF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후 설립된 많은 창업보육센터와 기술혁신센터들의 모범적인 모델이 됨.
 -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은 석유 파동 및 닉슨 독트린 등으로 대기업중심의 경제시스템이 흔들리는 시기로, 고용 및 신사업 창출 등 경제성장 정책이 시행되면서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중요시되어, 공공 부분의 주도하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함.
 - 1980년대에 보육의 개념이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과 결합되면서 더욱 강화됨.
산학공동연구와 기술 이전의 필요성과 강조되면서 BIO, IT 등과 같은 특정 산업 및 기술의 집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리서치 파크나 사이언스 파크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설립 및 활용됨
 - 2005년 이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Startup Accelerators Programs)이 급속하게 성장함.
성공한 기술 창업자(엔젤 투자자 포함)들이 3~6개월 간 사업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
- * 대표 사례: 데이브 매클루어가 대표로 있는 ‘500 스타트업’, 드롭박스를 발굴한 ‘와이콤비네이터’ 등

- 2011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 「국가혁신 전략의 5가지 핵심 요소」 중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 발표함. 창업기업의 성장 자금 지원, 기업가정신 교육, 멘토십, 연간 1480억 달러 규모의 연방 R&D 성과 상용화 강화로 혁신적인 창업기업과 신산업창출 지원, 창업 장애물 제거함. 특히 자금을 조성하여 재단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아메리카 파트너십(Startup America Partnership)’을 구성하여 향후 10만 개의 창업기업 지원함.
-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혁신국(Office of American Innovation)’ 설립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음.

2) 일본

- 일본의 창업보육센터는 1928년에 고베시의 시스템하우스센터와 1983년 교토시의 마이콤 테크노하우스 등이 중소기업을 집산화 및 협동조합화하는 형태로 입주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작됨.
- 본격적인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는 1986년 소프트노믹스센터(Softnomics Center)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음.
- 1999년 「신사업창출촉진법」이 제정되고, 1999년 6월에 일본창업보육협회가 설립되어 창업보육사업의 활성화 촉진 (JANBO→2008년 6월 JBIA가 이전)
- 일본은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경제산업성(METI)과 대학의 창업기업정책을 주관한 문부과학성(mext)에 의해 주도됨.
- 일본의 창업보육센터 유형은 민간주도형, 통산성 및 자치단체의 후원에 의한 민과합동방식인 리서치코어 (Research Core)형, 대학의 인재가 중심이 되는 대학주도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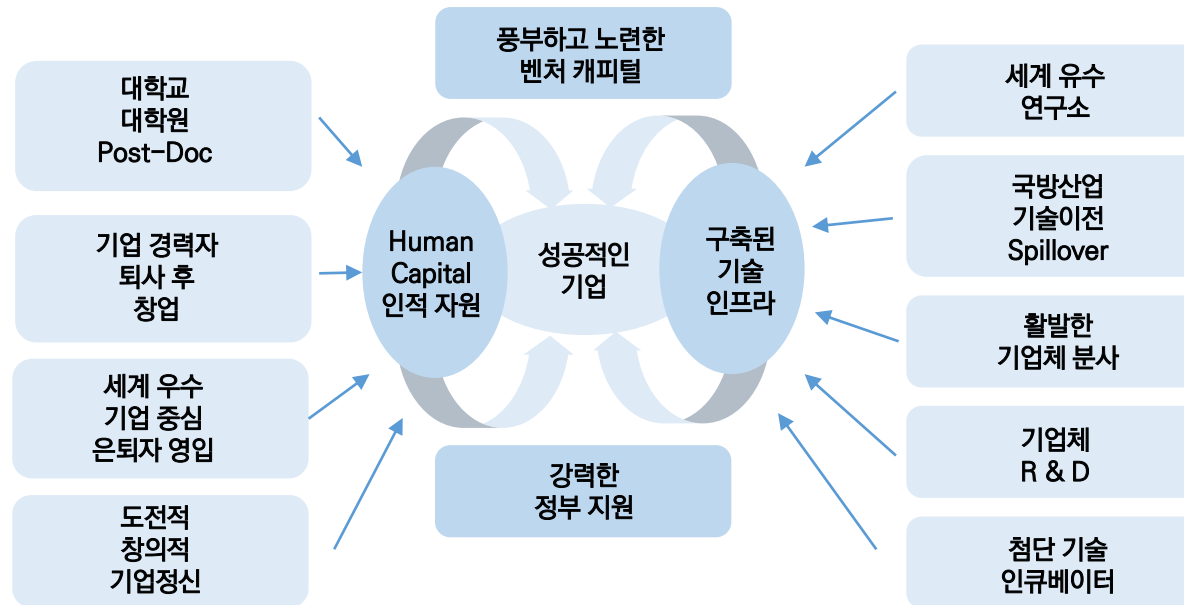
3) 독일

- 독일의 창업보육센터는 철강, 석탄 등의 전통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함. 독일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학의 전문교육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으로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가치를 걸고 시작되었음.
- 독일의 창업보육센터는 독일의 특수한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데, 서독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 극복과 동독 지역의 산학 연계 활성화에 주안점을 둠.
- 독일은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근거한 창업보육사업의 일환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1983년 베를린에 기술 창업보육센터(Business and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하였고, 1998년 정식 출범한 독일 혁신기술창업센터협의회 (ADT)는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 ADT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후원하는 연구소, 기술 이전 사무소, 기술혁신 컨설턴트,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회사들이 정책적으로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함.
- 독일의 창업보육사업의 내용은 단순히 재정 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 및 단체를 하나로 연결시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음.

4) 이스라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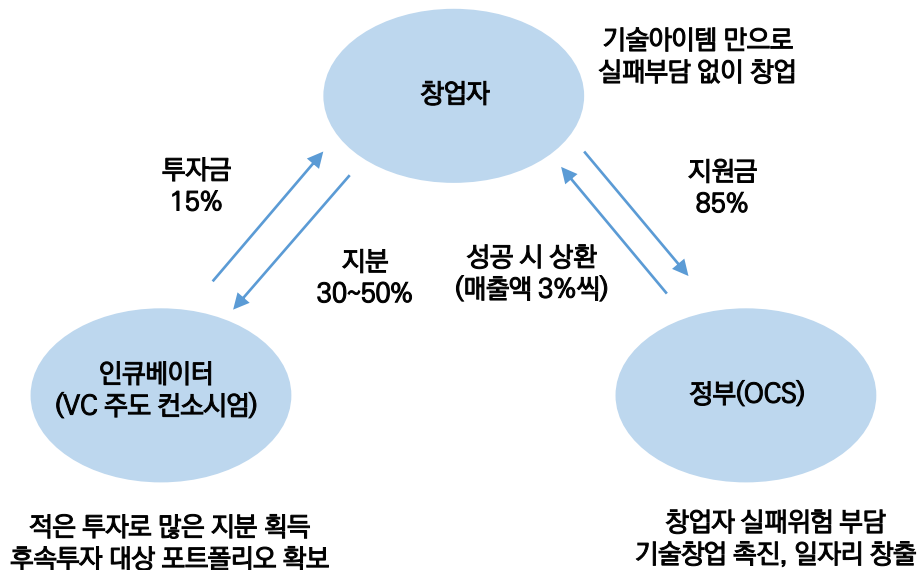
- 이스라엘의 창업보육사업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TIP(Technical Incubator Program)사업으로서, 이스라엘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국가 차원의 신념에서 비롯됨.
- TIP 사업은 무역산업부(The Ministry of Industry & Trade)의 수석과학관실(OCS, The Office Of Chief Scientist)의 주도하에 국가 차원에서 도입함
- OCS 는 공업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구소련 붕괴 이후 귀환한 75만 명이 유대인들 중 고급 과학기술을 지닌 우수 인재를 산업 발전에 투입하여 혁신기술의 창업화를 이루어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TIP를 도입함. 또한 OCS 주도 아래 R&D 투자와 R&D 글로벌 네트워킹은 많은 이스라엘 벤처 기업들의 활발한 기술개발 활동으로 이어져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 냄.

[이스라엘 창업 · 벤처 생태계의 특징]



- 이스라엘의 기술창업보육센터는 국가가 주도한다는 점과 이민자를 유입한다는 두가지 특징이 있으며, 하이테크파크와 유수대학 등의 창업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이스라엘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목표는 창업촉진, 기술 아이디어의 발굴 지원을 통한 신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 새로운 이주민의 기술혁신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지원, 전문적으로 숙련된 인력 및 이주민의 고용창출에 있음.
- 정부주도의 각종 인큐베이팅시스템(정부 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포함)과 함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는 실패하더라도 창업가에 부담이 되지 않음.
- 정부 예산으로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자금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진행도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스라엘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조]



[이스라엘 창업보육센터의 성공 요인]

- 인센티브 매커니즘 (VC, 창업자)
- 하이테크 기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 엄격한 선정평가와 마일스톤 관리
-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자금지원
- 분야별로 특화된 인큐베이터

5) 핀란드

- 인구 530만여 명에 불과한 핀란드는 디지털산업, 특히 정보통신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대학과 산업체가 사이언스파크(Science Park) 또는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를 중심으로 물리적 인접성을 기초하여 일체가 되도록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하기 힘든 나름대로의 산학융합형 창업보육 모델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임.
- 핀란드정부가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이유는 2008년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산업체 및 대학, 연구기관, 정부 사이의 네트워킹을 활성화 함으로써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였음.
- 첨단 과학기술 단지인 ‘오타니에미(Otaniemi) 사이언스파크’는 북유럽 최대의 하이테크 창업보육 단지로서 지식기술에 기반한 핀란드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함.
 - *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창업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 이곳은 산학협력의 최종 목표를 창업에 두고 산학연간의 네트워킹과 네트워킹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보디가드(bodyguard)라 불리는 해당 기업별 전담 조연자 및 담당자를 통해 기업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 담당 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문기관과 기업간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사업 분석, 서비스 수요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함.

6) 프랑스

- 누마(NUMA): 2011년 탄생한 파리의 대표적인 창업지원협회로, 운영 철학은 높은 퍼포먼스(Hire Performance)와 개방성(Openness)임.
 - * 누마: 공간을 창업 단계별로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피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파리 시내에 산재한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크의 중심 핵으로 네트워크 이벤트를 주최 · 운영함.
- Paris & Co : 지자체가 중심이 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Paris & Co가 파리 수도권의 혁신&경제 개발의 주체임.
 - 프랑스와 국제 창업기업 개발 및 엑셀러레이션 지원분야
 - 도시 중심의 실험 강화 (도시 환경과 조건에서 혁신적인 장치 또는 접근방식 테스트)
 -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혁신촉진 및 확산 지원
- Ecole42 : 파리의 디지털 캠퍼스
 - 2013년 설립, 등록금 없는 비영리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학교
 - 프랑스 자비에르 니엘(학교의 총 책임자) 중심 여러 파트너와 설립
 - 강사 및 대학과 같은 커리큘럼이 없음.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안한 프로젝트 수행하며 커리큘럼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
 - 학생들 프로젝트 팀 구성, 프로젝트의 완료에 제한시간 무, 5개과목의 시험을 통과하면 인턴십을 할 수 있음.

7) 영국

- 영국 정부는 Science Enterprise Challenge(SEC)를 통해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을 지원함. SEC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연구자와 학생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교육, 기업을 통한 교육, 기업을 위한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 특징임.
- 2010년 캐머런 총리의 테크시티(Tech City) 조성안 발표 이후 정부, 기관, 대학 등에 체계적 지원을 통해 런던 동부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활성화함. 테크시티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 지원정책 ‘퓨처피프티’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5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낮은 법인세율 적용, 세금감면, 신기술연구 및 개발지원, 공장건설비용 지원 등 성장을 위한 지원혜택을 부여함.
- 2012년 4월 초기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초기기업투자법(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을 도입하여 연간 투자금액 10만 파운드 한도를 기준으로 소득세 50%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을 지원함
- 2013년 런던의 금융 중심지에 L39를 오픈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금융산업과 대표적 스타트업 기반 산업인 핀테크가 함께 시너지를 내어 성장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구축함.
- 영국의 스타트업 정책의 특징은 정책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이용하고, 성장가능성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관련 기업들의 위치적 집중화 및 교류,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높은 성공 및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있음.

나. 해외 유사 창업보육기관 운영사례*

1) The SETsquared Partnership (대학 직접운영 방식 : Managed by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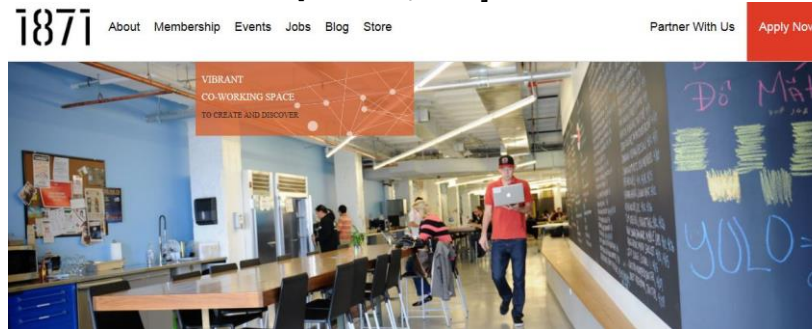
- 'UBI GLOBAL Ranking(World top business incubator)' 순위에서 대학 직접운영 방식 창업보육센터 랭킹 1위를 차지
- 영국의 연구중심 5개 대학(University of Bath, University of Bristol, University of Exeter, University of Southampton, University of Surrey)이 협력하여 아이디어 초기단계에서 스케일업 단계까지의 창업기업 육성 지원
 - 2002년 설립 이후로 학생 창업가, 대학 연구자, 기술기반 창업자, 혁신 중소기업 대표 및 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업 안정화에 기여
 - 매달마다 정부지원자금지원용 사업계획서 작성법, 효과적인 제품 및 서비스 PR 방법, 스케일업 투자를 위한 Scale-up Investor Breakfast Briefing, 초기창업기업 및 창업자의 투자 기회를 2개월마다 1회씩 제공하는 투자설명회 S100 Club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진행
- 학생창업기업 육성과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단계별, 대상별 4단계 프로그램 운영
 - 학생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회 발굴에서 비즈니스 훈련까지 설계되어 있는 'Student Enterprise'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의 연구자는 연구능력을 토대로 창업가 및 혁신가와 연계·협력하여 성공적인 혁신활동방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Researcher to Innovator' 을 운영
 - 대학의 연구결과를 기술사업화방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ICiRe',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는 다음단계의 성장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Scale-up' 을 운영
- 2002년 설립 이후 약 3,645명의 창업가를 지원하였으며, 2,1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조 2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1만개의 일자리 창출하였음. 향후 2030년까지 3조7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상

*출처 : 고혁진 외(2019) 국내 창업보육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자료

2) 1871 : Chicago's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Center (대학 제휴 방식 : Affiliated with University)

- 'UBI GLOBAL Ranking(World top business incubator)' 순위에서 대학 제휴 연계형 창업보육센터 랭킹 1위를 차지

[1871 메인 홈]



* 출처 : <https://1871.com/>

-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여 300명 가까이 사망하여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화재 사건으로 시카고 도심 지역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화재 이후 재건을 통해 미국의 경제 중심지 중 하나로 성장한 스토리 벤치 마킹
 - 도시재건을 위한 열정과 창의성을 이어받아 아이디어 공유, 경험공유 등을 통해 세상을 바꿀 스타트업 육성이 목표
 - 시카고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지원환경을 조성하여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발명가, 디자이너, 창작자 등 기술적 문제 및 창업과정 의사결정 등 다양한 문제 지원체계 구축
 - 창업가의 열정을 돋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특강, 세미나 등이 100개씩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CEO, 기술자 및 디자이너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
 -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가들에게도 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와 협회 등과의 협력관계 형성

- 특징으로는 정기적인 네트워킹 기회제공, 분기별 스피드 네트워킹 기회 제공(멘토, 투자가, 이사진, 잠재 파트너 및 창업가), 성공한 창업가, VC, 분야별 전문가, 인플루언서 등 1년에 500회 이상 초청 특강 진행
- 매달 30회가 넘는 워크샵(전략, 영업, 펀딩, 법률, 제품생산 등) 진행, 정기적 1대1 멘토링 제공 및 제품개발 및 상품광고를 위한 PR, 미디어 활용 광고, 사진 및 영상 촬영 지원, 고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1871 창업보육센터]



-*출처 : <https://1871.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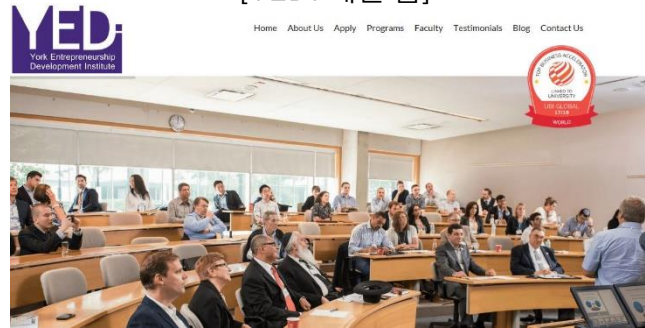
3) Guinness Enterprise Centre & University College Dublin (대학과 협력: Collaborating with University)

- World top business incubator 대학협력 창업보육센터 부문 세계 1위 차지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
- 전세계 23개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대학과 연계 협력관계 형성, 1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아일랜드 창업허브역할 수행하고 있으며, 카페, 아침식당 공간, 자전거 거치대, 샤워시설, 24시 방범시설, 화상 회의공간 등 제공
- 500명의 창업자와 지원인력 상주, 정부지원관계자, 투자가, 산업별 전문가, 분야별 멘토 상주
- 입주기업은 아일랜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육성 프로그램(투자연계, 프로젝트지원 프로그램 '18년 기준 132개 스타트업 지원) 'Enterprise Ireland' 연계지원
- 2018년 입주기업 및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자 대상 아일랜드 창업기업 및 스케일업관련 기업연계 'Coconnect' 프로그램 도입(약 3억투자), 아일랜드 스타트업 커뮤니티 형성 및 공간, 투자가, 멘토, 교육 프로그램 공유

4) York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 (YEDI) (대학연계 운영 : Linked to University)

- World top business accelerator 대학연계 엑셀러레이터 부문 세계 1위 차지하였으며, 엑셀러레이터 기관과 캐나다 York University와 연계 운영

[YEDI 메인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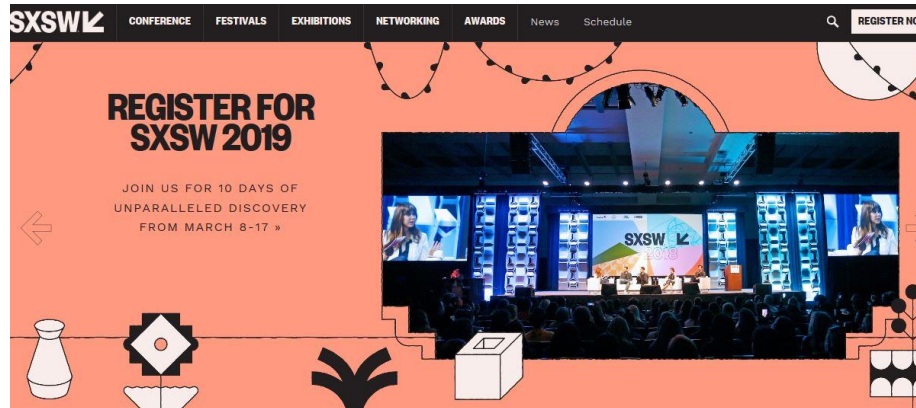
* 출처 : <https://www.yedinstitute.org/>

- 창업보육 트랙, 비영리 트랙, 젊은 창업자 트랙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York 대학의 캠퍼스 시설 인프라를 활용
 - 창업보육 트랙(Incubation Track): 집중 16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샵 및 훈련과정으로 운영함. 대학의 전문강사, 각 산업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본 과정 이수 후 시드 머니 투자 진행(3천만원~5억원)
 - 비영리 트랙(Not for Profit): 15개의 비영리 팀 혹은 소셜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16주 동안 기업가정신,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개발 및 성장전략, 재무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함양 이후 'Venture Fair' 기회 제공
 - 젊은 창업자 트랙>Youth): 15~29세 대상 30명의 젊은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집중 16주 과정으로 구성, 과정 이수 후 쇼케이스에서 자신의 아이디어 혹은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여 seed, early, growth stage로 구분하여 2~5백만원 지원
- 자체 YEDI VC 펀드를 조성하여 개인 투자자, 엔젤투자자 그룹과 벤처캐피탈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투자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 투자대상은 제품 상용화단계와 1단계 투자를 받은 사이의 제품생산 직전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투자를 지원

5)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캠퍼스 ATI(Austin Technology Incubator) BI

- 대학생 및 일반 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수행 멘토링, 자금지원, 네트워킹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4세대형 BI로서 역할
 - 바이오/헬스케어, 재생에너지, 물류/운송시스템, 수도관리 및 식량 등의 분야를 집중 육성
 - South by Southwest (SXSW) 융복합 축제 개최: 매년 3월 다양한 콘텐츠와 BI에 입주해 있는 하이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하여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운영

[SXSW 융복합 축제 개최]



*출처 : <https://www.sxsw.com/>

- 2018년 기준 ATI 졸업기업 88% 투자자 확보, 2009년 이래 총 투자계약 체결액 2,230억원

6)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ASU : Arizona State University) BI

- 학과 구조조정, 미래지향적 전공 신설, 지역사회 협업 모델 개발, 창업강좌의 전교생 확대 운영 및 2개의 BI 센터 운영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Center, Resource Innovation and Solution Network (RISN) Center)
 -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Center는 4세대 BI 역할 수행(창업자금 지원 및 외부 네트워킹), 창업자금 조달 및 투자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하고, 투자관련 네트워킹 활성화
 - 초기 단계의 바이오, 메티컬, 그린테크,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창업기업 특화 지원 센터로 아이디어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
 - Resource Innovation and Solution Network (RISN) Center: 지역 특화 산업 활성화 BI로서 폐기물 재활용, 재생산 분야 특화 창업지원센터로 운영

7) 노스캐롤라이나 주 Research Triangle Park BI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더럼시의 듀크대학, 채펠힐시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3개 대학을 연결 삼각지대(트라이앵글)의 중심에 건설된 연구단지로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고 함.

[노스캐롤라이나 주 트라이앵글 파크]



- 1924년 개교한 사립대학
- 연구중심 대학(절반가량의 학생이 석·박사나 전문 학위 과정)
- 의학센터의 병원과 임상·교육·연구 프로그램이 유명하며 특히 생물학과 생명공학분야가 우수



- 1887년 개교한 주립대학
- 자연과학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경쟁력
- 특히 농업 및 공학 분야가 우수



- 1789년에 설립된 주립대학
- 공학과 농업분야를 제외한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역할
- 특히 생물학과 컴퓨터공학 우수

- 벤처창업, 기술혁신 거점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IBM 연구센터 이전 성과 보유
- 글락소스미스클라인.시스코.소니.에릭슨 등의 첨단 IT기업과 바이에르.바이오젠 등 굴지의 제약 회사들이 연구센터를 두고 있는 등 145개(119개 연구개발기업 및 연구소 포함) 기업이 입주
- 3개 대학 BI 중심 창업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교수창업, 연구원 창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성과를 거둠
-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지자체와 대학의 협업을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를 선진화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국내에도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리서치 트라이앵글과 같은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지역창업생태계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
- 5개의 창업보육센터
 - 250개 이상의 벤처기업의 창업과 분리·신설
- 산학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 1990년까지 17개의 첨단벤처기업
 - (NCSU 7개, 듀크대학 6개, UNC 채플힐 4개) 분리·신설
 - **교원창업(SAS Institute, Delta, Ardent Pharmaceuticals, Inc. Hangers Cleaners)**
- 지역경제 활성화**
- 대기업 및 벤처기업 입주를 통한 급격한 고용증가
 - 1인당 소득 증가
 - 지역 내 고급인력 정착 유도
 - 연구단지 주변의 지역 경제 활성화

[핵심 지원 서비스 및 성과]

II. 창업보육센터 기능과 운영시스템

1. 창업보육센터의 기능과 역할
2.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단계 및 운영모델
3.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시스템

가.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 ① 미국의 경제학자 쉘페터(J. A. Schumpeter)는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발견과 유통경로의 창안, 새로운 공급원, 신공정(조직)의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한 창조적파괴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함.
- ② 이러한 혁신활동은 시장에 있어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됨. 경쟁이 심화되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모험적인 창업가는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 창업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포함한 인프라가 창업을 이끌어 대학이나 연구소의 교수, 연구원 및 기업 종사자 및 발명가 등이 창업자로 변신하게 됨.
- ③ 이러한 창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원은 물리적 공간, 네트워크, 경영 능력 및 사업화 서비스 등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창업보육센터임.



창업보육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한편,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창업보육센터 졸업 후 스스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

시설/설비

사무행정

경영

재무회계

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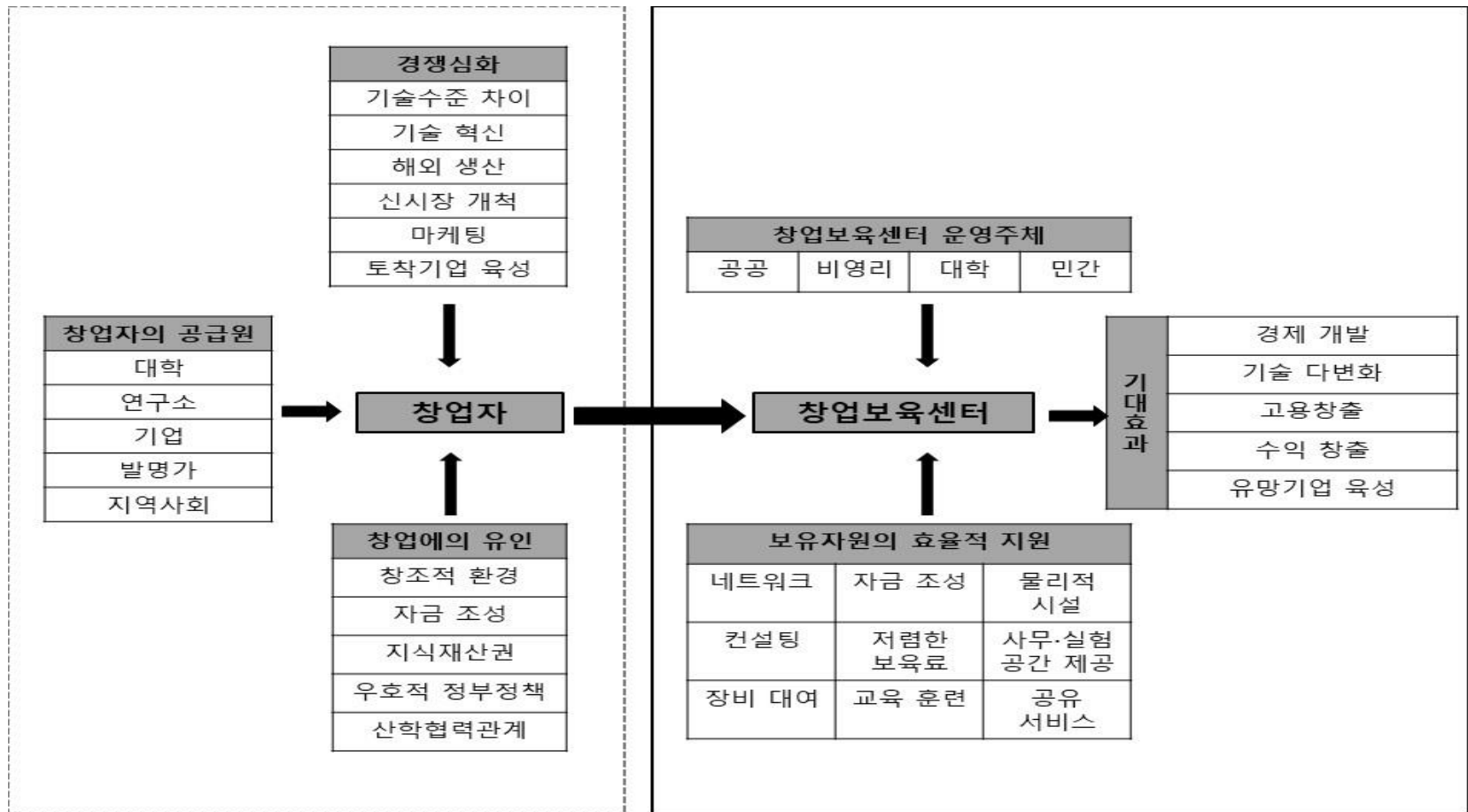
법률

기술자원

[창업보육센터 제공 자원 및 서비스]

-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은 설립 주체에 따라 다양하며, 설립목적에 따라 기대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남. 이상의 창업 과정과 창업자 및 이들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보육센터 기능]



나.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경제적 역할

벤처기업 활성화 역할

지역 연계 역할

1) 창업보육센터의 경제적 역할

- ①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 신규 기업을 보육하여 이들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창출 기여도를 높여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
- ② 전국에 설치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 기존산업 쇠퇴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적 대표(특정)산업을 육성
- ③ 입주기업을 둘러싼 여타 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연관 효과 창출하여 지역 경제 발전 촉진
- ④ 지역경제 저변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고용 촉진 및 지방자치 단체의 세수 확대 도모

2) 창업보육센터의 벤처기업 활성화 역할

① 기업의 생존율 제고

높은 고정비용, 투자자금 접근도의 부족, 불충분한 기술 및 시장정보, 취약한 경영 기법 및 마케팅 능력, 높은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

→ 창업을 저해하고 기업의 생존율을 낮추는 주된 원인을 BI를 통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의 장벽을 완화

② 기업가 정신 함양으로 창업 촉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취업과 창업의 한계선상에 있는 인력들의 개인성과 모험성을 북돋아 창업을 촉진

③ 지식 기반 기업의 창업 촉진으로 지역경제 내 유입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혁신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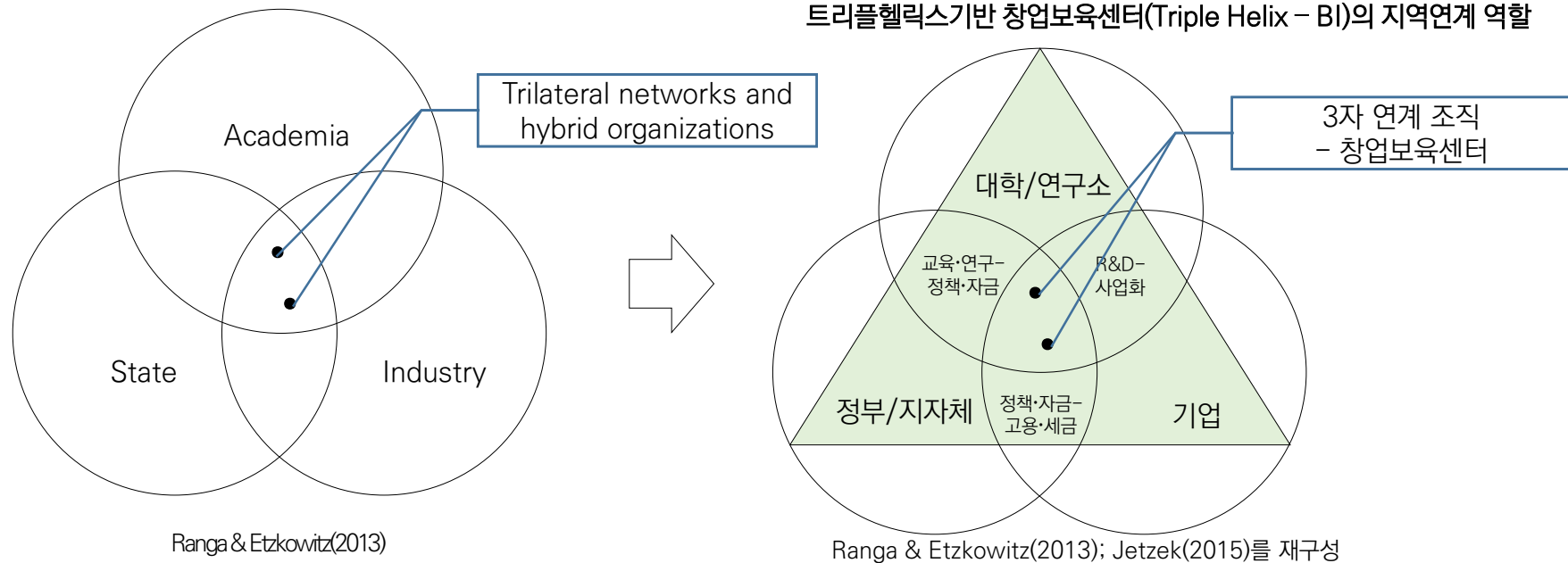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하거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구성원들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지식 기반화를 촉진

④ 벤처기업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의 기능

벤처기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은 벤처 캐피탈, 엔젤 등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 투자대상기업을 양성하여 투자 대상을 넓히고 기업과 투자가를 연결시키면서 탐색 비용을 줄이는 역할

3) 창업보육센터(트리플헬릭스기반 Triple helix - BI)의 지역연계 역할

- 대학(및 연구소)의 지역연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연계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트리플헬릭스 (Triple helix)는 대학, 산업, 정부가 나선형으로 연계하여 발생하는 활동으로 과학 기반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모델임. 이를 기반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관점에서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소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 이전하고자 하는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혁신을 시행하며, **기업은** 유망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하고 이를 시장에 내놓아 이윤을 창출함. 이 객체들의 교호적 관계를 통해 제도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기반 경제 개발을 창출하고자 함(Etzkowitz, 2002).



*Etzkowitz, H., 2002. The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Implications for Policy and Evaluation, SiSTER

** 2015_(Thorhildur Jetzek) Elements of a Successful Big Data Hackathon in a Smart City Context.

*** Ranga, M., & Etzkowitz, H., 2013, Triple Helix system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innovation policy and practice in the Knowledge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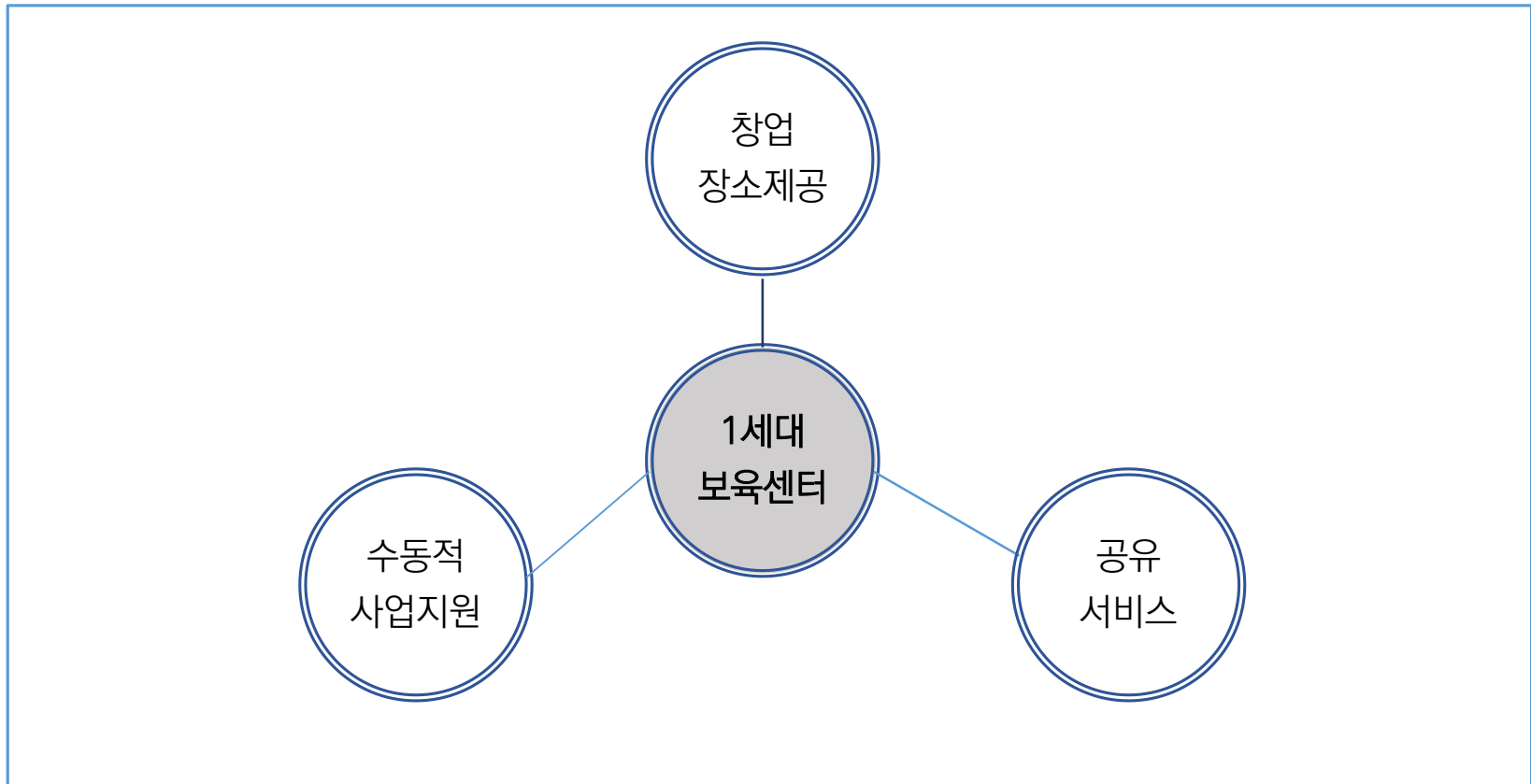
INDUSTRY & HIGHER EDUCATION Vol 27, No 3, August 2013, pp 237-262, doi: 10.5367/ihe.2013.0165

가. Tom Strodbeck & David Terry의 창업보육센터 발전단계

* 다음의 창업보육센터 발전단계 1세대에서 5세대는 미국 NBIA의 예비회담에서 발표한 톰 스트로트벡과 데이비드 테리(Tom Strodbeck & David Terry, 2010)의 연구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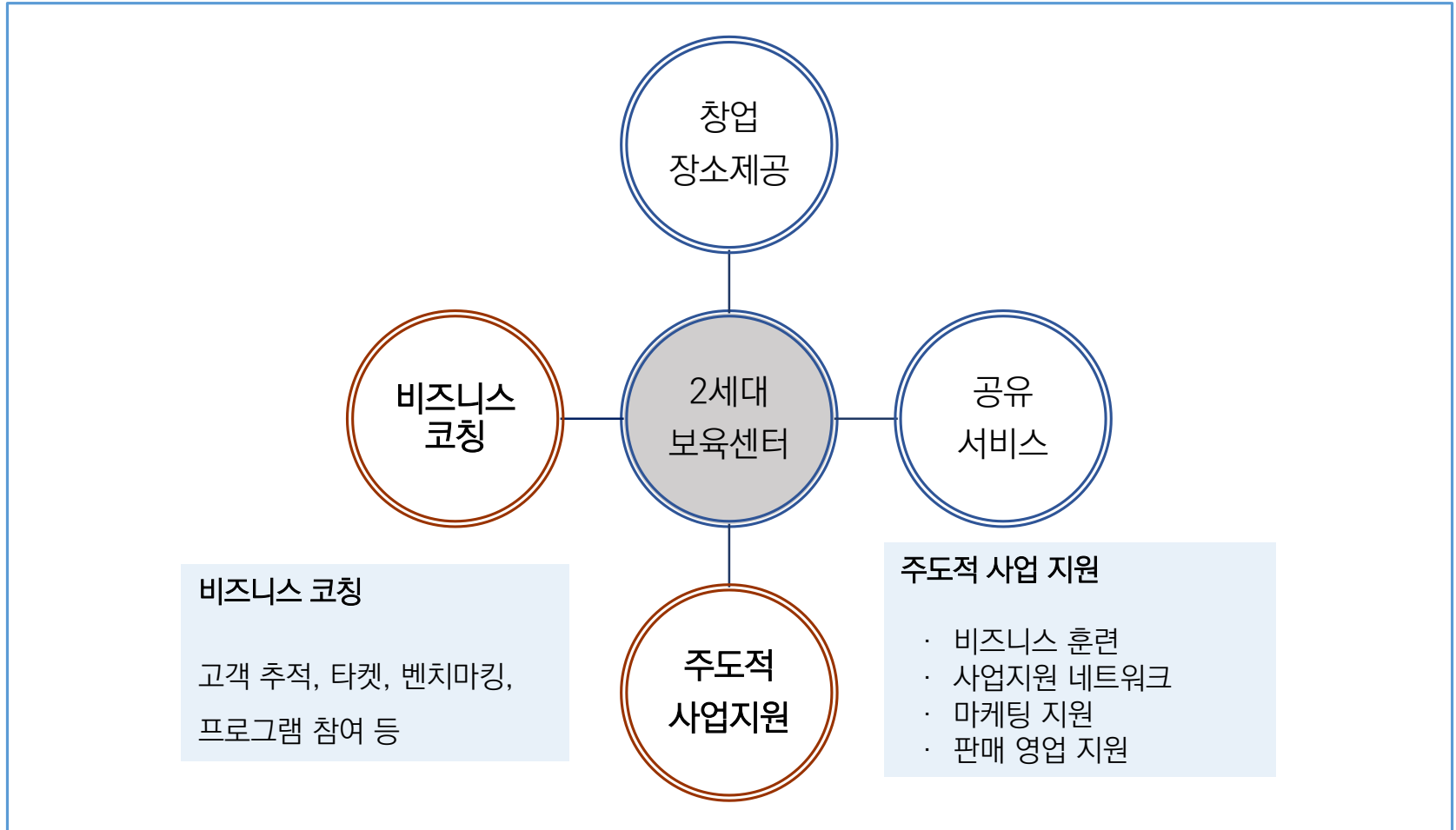
○ 1세대 창업보육센터

- 기존 1세대 창업보육센터 기능은 창업 공간 제공, 공유 서비스, 수동적 사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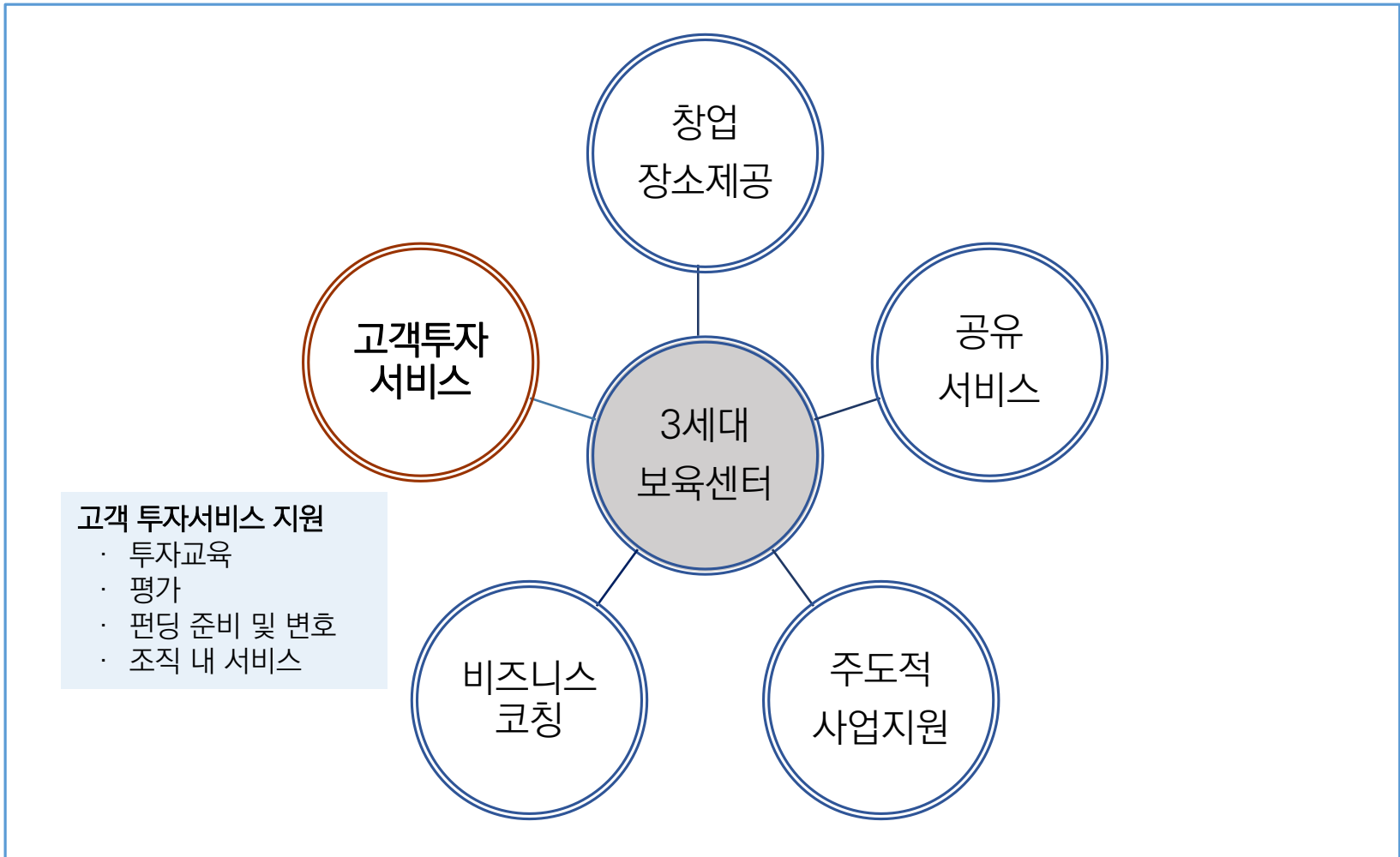
○ 2세대 창업보육센터

- 2세대 창업보육센터는 1세대 창업보육센터 기능과 수동적 사업지원에서 주도적 사업지원으로 변경되어 창업 훈련, 사업 지원 네트워크, 마케팅 지원, 판매영업 지원, 멘토 기능 등이 새롭게 추가됨. 또한, 창업 코칭 분야를 추가하여 목표 고객 접촉과 벤치마크 대상기업 협력 프로그램의 기능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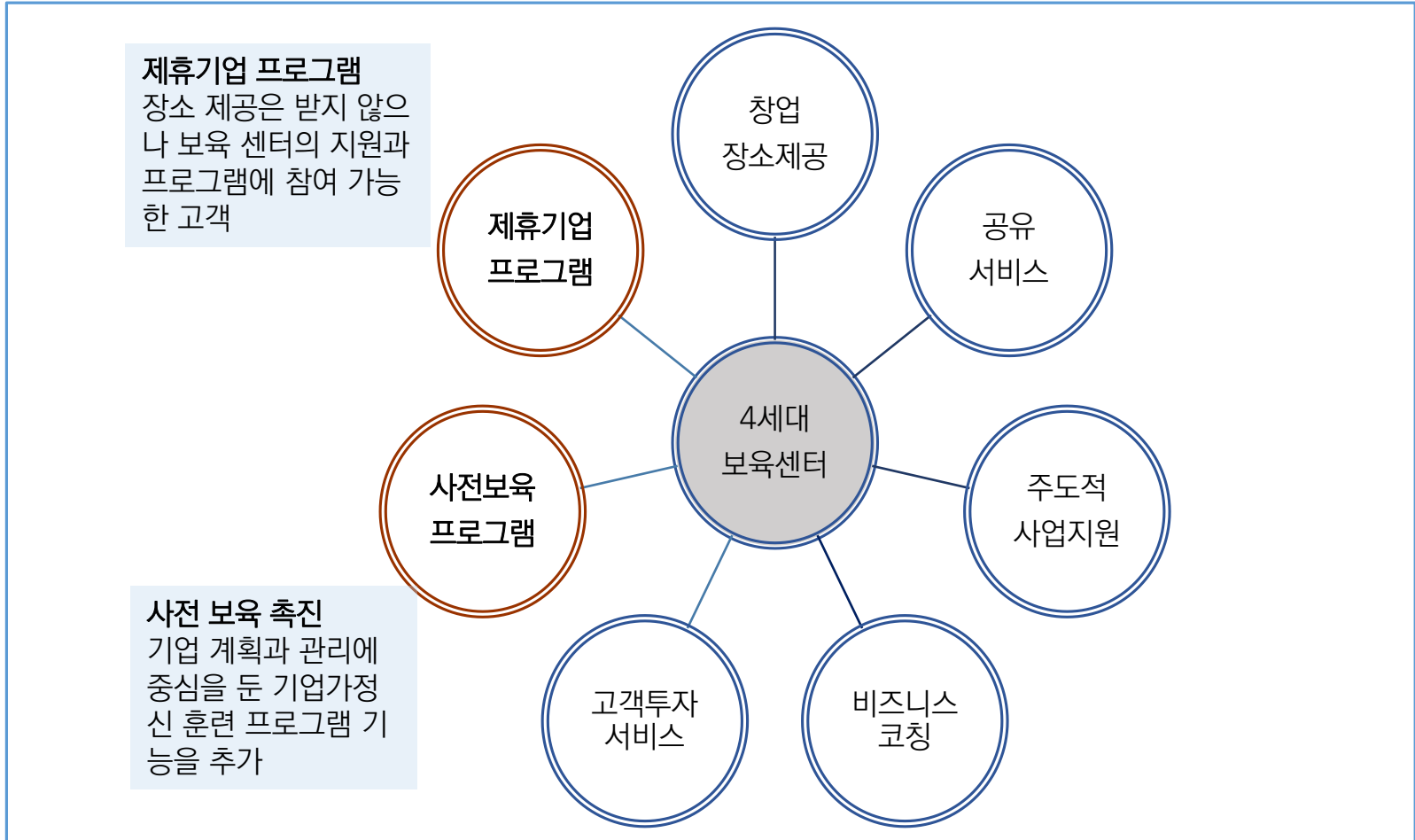
○ 3세대 창업보육센터

- 3세대 창업보육센터는 2세대 기능에 추가로 창업보육센터 입주회사 고객들의 투자 서비스를 제공 예를 들어 투자교육, 평가, 펀딩 준비, 변호, 조직 내 서비스 등을 제공



○ 4세대 창업보육센터

- 4세대 창업보육센터는 장소 제공은 받지 않으나 창업보육센터의 지원과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제휴기업 프로그램 기능과 사전 보육 기능, 즉 기업 계획과 관리에 중심을 둔 기업가정신 훈련 프로그램 기능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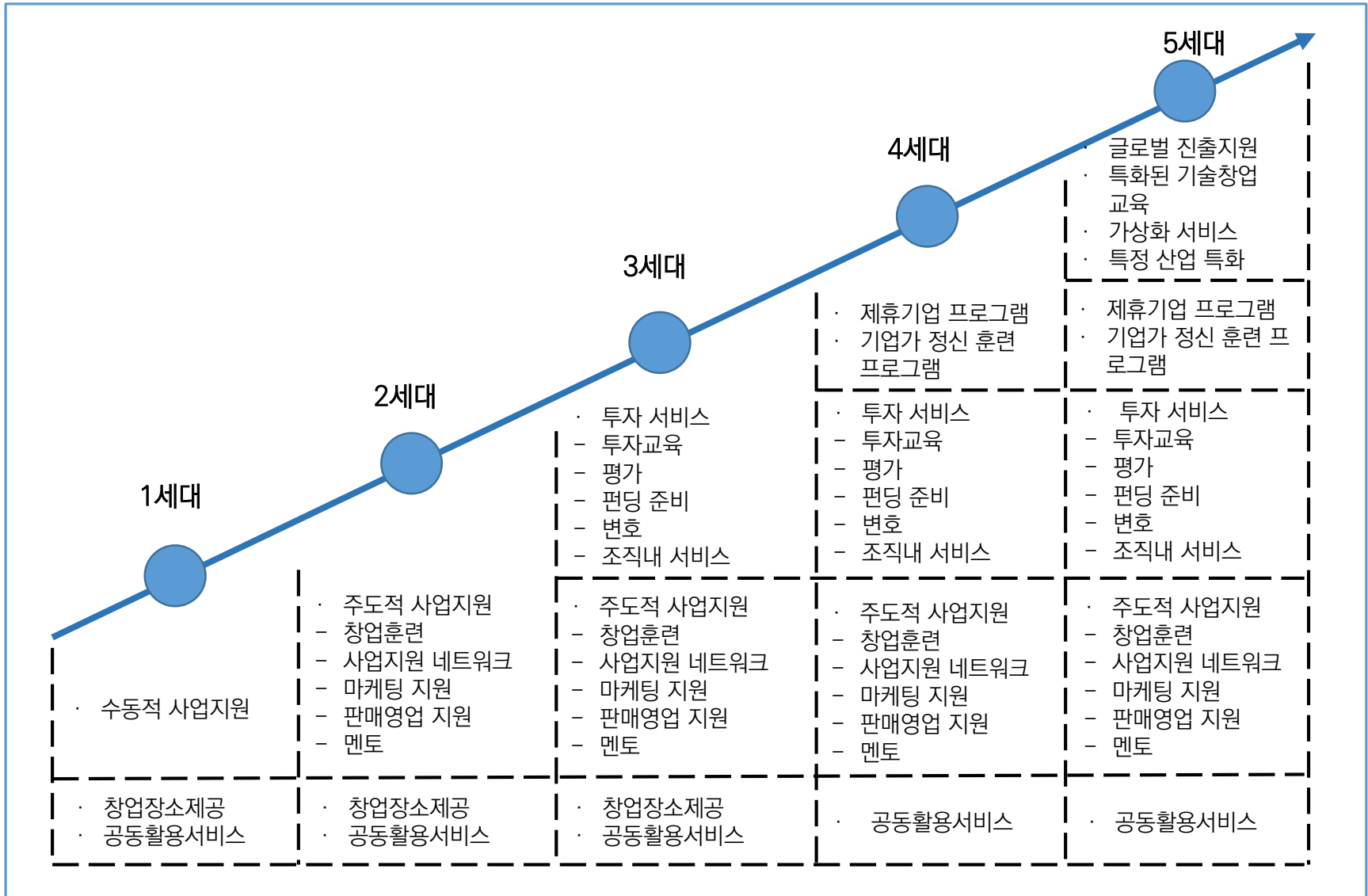


○ 5세대 창업보육센터

- 5세대 창업보육센터는 4세대의 기본적인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특화된 기술창업 교육, 가상화 서비스, 특정 산업 특화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5세대 주요 특성	주요내용
글로벌화 (Glob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 전반적으로 4세대 창업보육에 글로벌 개념 추가
특화된 기술창업 교육 (Intensive Technopreneur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육이 아니라 기술창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 창업에 특화된 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상화 서비스 (Virtu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시설, 공간 등 물리적 지원 서비스 외에 온라인 지원서비스 시스템을 추가한 개념 - 주로 Virtual 컨설팅, Virtual 네트워크 지원, Virtual 투자지원 시스템 등 온라인 상에서 체계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특정 산업 특화 (Speci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기술창업보다는 IT, 반도체, 바이오등 특정 산업에 특화하여 지원 서비스 제공 개념 - 또한 창업 지원 서비스의 특정 기능(교육, 컨설팅, 자금 지원 등)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 개념 포함

○ 미국의 국제창업보육센터협회의 창업보육센터 발전 체계



나. Lewis등의 운영모델*

- Lewis et al. (2011)은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BI가 접근해야 할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핵심 창업보육 서비스, 그리고 기술 BI 프로그램 맞춤형 추가 핵심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 특히, BI가 보유해야 할 핵심 창업보육 성공 요인을 서비스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사업계획 측면, 법률 지원 측면, 자본/재정 측면, 마케팅 측면, 인프라 측면, 네트워킹 측면, 교육 측면에서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함.

구분	활동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행가능성 연구 시행 - 합의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목표 개발 - 입주기업의 입주&졸업 기준 마련 - 결과 데이터 수집 -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지원 서비스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구축 - 지역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 창업공동체를 초월하는 시장 인큐베이터 역할 구현
핵심 창업보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작성과 사업 기초 제공 - 법률 서비스 지원(일반적 법률서비스, 지적재산권 보고,법인 또는 다른 법적 사업 구조, 수입/수출 요건 등) - 자본/재정에 대한 접근 - 마케팅 지원 - 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 접속 - 지역 사업지원 서비스와 입주 기업을 위한 멘토링 위원회 제공 - 고등 교육기관과의 밀접한 연대 - 창업자,기업가,타 입주기업간의 네트워킹 - 발표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 에티켓 향상을 위한 지원
기술 BI 프로그램의 추가 핵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상업화/사업화 지원 - 낮은 이용료로 특수 장비와 실험실 대여 - 지적재산권 관리 지원

*출처 : 고혁진 외(2019) 국내 창업보육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자료

다. Telefonica의 운영모델*

- Telefonica(2013)은 창업보육센터가 성공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모델을 제시하였음.
투자, 맞춤형 보육, 행정 시스템, 통계, 인센티브, 네트워크, 기술 역량 강화, 사회경제적 성과 관점에서 지원가능한 운영 모델 서비스 유형을 제시함

- 자금격차를 고려한 성장단계별 투자(시리즈 A, 시리즈 B 등)
- 일반 보육과 특화 보육의 균형
- 지원 관료주의 축소(행정절차 간소화)
- 비교 가능한 자료로 투명성 제고
-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대학,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등)
- 벤처의 기술역량 촉진
- 창업보육 프로그램(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성과 측정

*출처 : 고희진 외(2019) 국내 창업보육센터 운영 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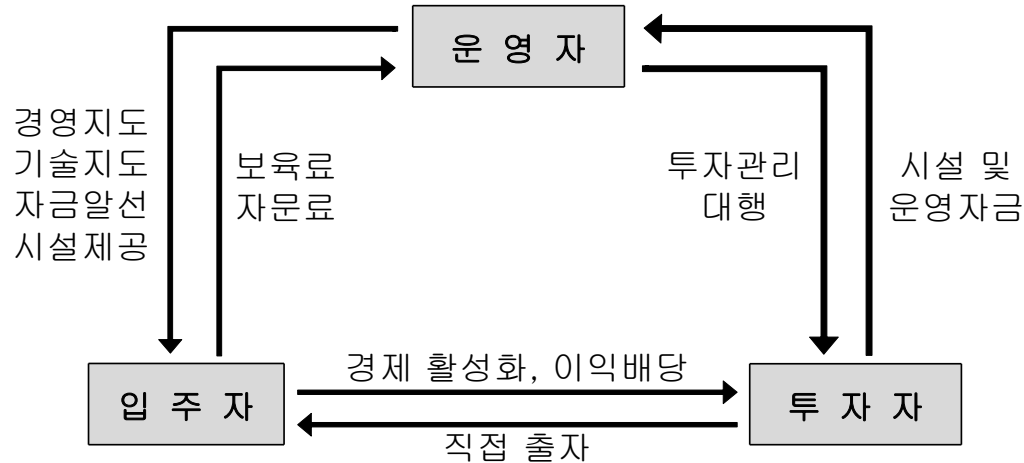
[참고] 해외 우수보육기관이 제공하는 15개의 주요서비스(VASILY RYZHONKOV, 2013)



- ① 기본적인 사업운영 지원
- ② 네트워킹 활동
- ③ 마케팅 지원
- ④ 회계 및 재무관리 지원
- ⑤ 전문화된 장비 지원
- ⑥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 ⑦ VC, 엔젤캐피탈, 멘토, 파트너와의 연계지원
- ⑨ 은행융자, 벤처캐피탈 창업자금 유치 지원
- ⑩ 공동관리, 공유 사무공간 지원 서비스
- ⑪ 상위 교육기관과의 연계
- ⑫ 종합적인 경영 훈련
- ⑬ 프리젠테이션 작성 및 발표 훈련
- ⑭ 자문단 또는 멘토링 지원
- ⑮ 전자상거래 지원
- ⑯ 인적자원 훈련

*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기본 모형과 목표 및 전략 차원의 과정 모형, 두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 기본모형(운영자, 입주자, 투자자 3대 기본요소)



- 운영자는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로 투자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제 운영을 수행하는 관리·기술센터와 같은 업무조직임.
- 입주자는 기술적 능력이 뛰어나고 지역 또는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기업임.
- 투자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민간 등으로 창업보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지원활동과 기술지도 사업을 하며 운영을 감독함.

┌ 공공투자자 : 경제 활성화 등 거시적인 효과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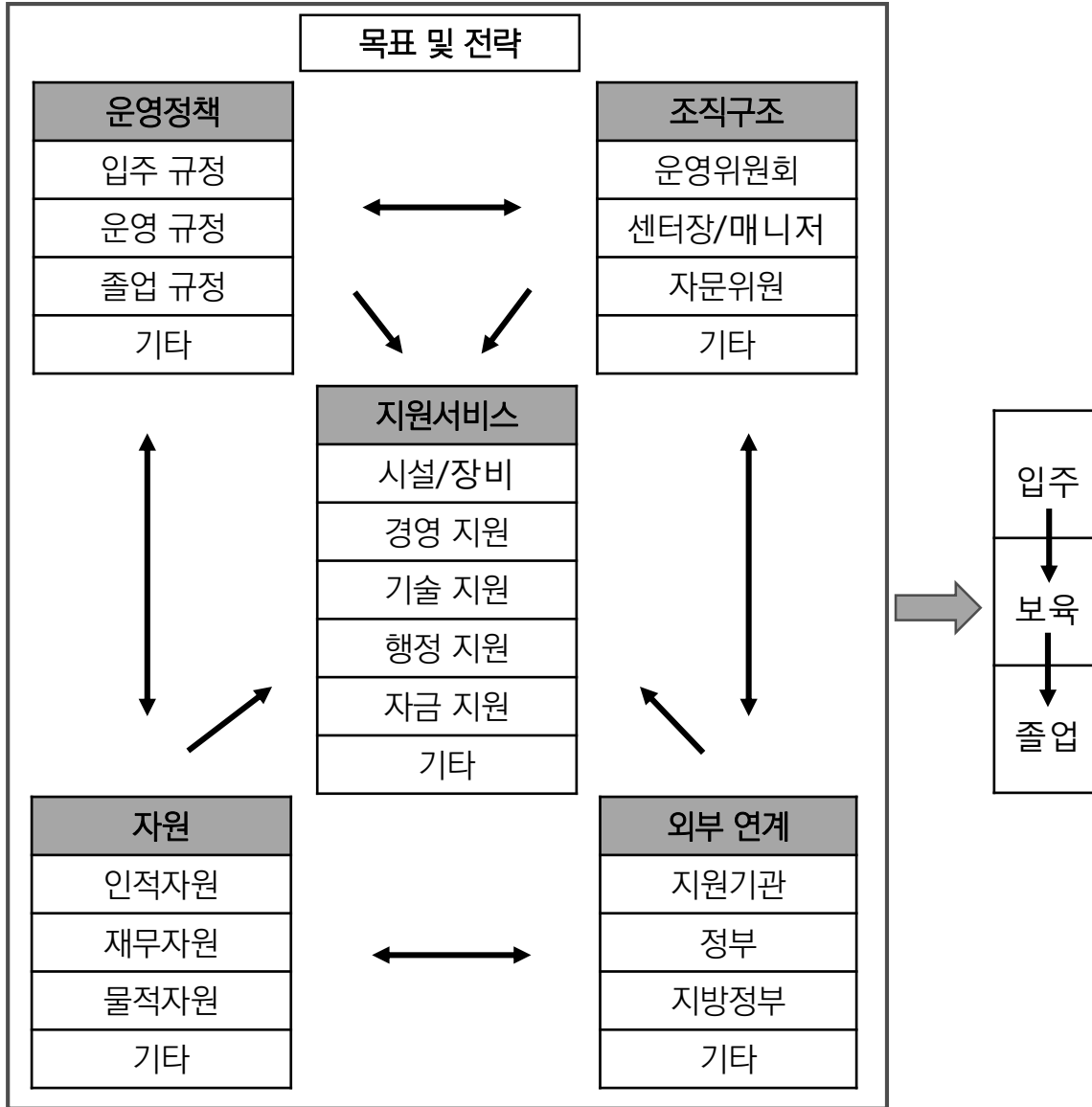
└ 민간투자자 :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배당수익 또는 주가 상승에 의한 수익을 기대

나. 목표 및 전략 차원의 과정 모형

- 창업보육센터 운영시스템의 과정 모형은 설립목적, 물리적 위치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운영 시스템을 목표 및 전략 차원의 과정에서 볼 수 있음.
- 운영시스템은 입주, 보육, 졸업이라는 기본적인 운영활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요소들 간의 관계
- 주요요소는 1)운영정책, 2)조직구조, 3)자원, 4)지원서비스, 5)외부와의 연계로 분류하며, 이 요소들은 운영목표와 전략에 영향을 받음

주요 요소	운영시스템 세부 특성
목표/ 미션	창업보육센터가 추구하는 목표의 명확성 및 수치화, 운영기관별 목표의 구체화 등
운영정책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정책으로 미션과의 적합성, 특성화(업종/보육단계), 입주/선정 및 퇴출/졸업 정책의 공정성 등
조직구조	창업보육센터의 실행 조직으로 조직 형태와 관심도, 참여자의 다양화 및 참여도, 관리팀/스태프의 양적·질적인 측면과 관련 기관과의 우호적 관계성
자원	지원자로부터의 자금 지원,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과 규모 및 예산의 자립도 등
지원 서비스	기본 공유 서비스는 공간 제공, 확장 지원, 경영 지원, 기술 지원, 재무 지원, 전문서비스 지원 등 대학 연계 서비스 지원은 교수 및 학생 참여, 부대시설 이용, 실험실과 작업장 이용, 관련 R&D 활동, 기술 이전 프로그램, 교육훈련 등의 참여 용이성 및 지원 등
외부와 연계	입주기업 간 및 졸업기업과의 연계, 타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다양한 내·외부 네트워킹 활동

[창업보육센터 운영시스템 과정 흐름도]



-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시스템은 입주, 보육 및 졸업이라는 기본적인 운영활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의미함
- 주요요소 : 운영정책, 조직구조, 자원, 지원서비스, 외부와의 연계 등 5가지로 분류. 이는 운영 목표와 전략에 영향을 그림과 같이 받음
- 주요요소들에 의해 입주기업 선발, 보유 자원 지원, 졸업지도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센터의 지원범위,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이 결정

○ 창업보육센터의 목표 및 운영전략

목표

- ① 경제발전 측면 :
신사업 창출,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특정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특정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 ② 기술사업화 측면 :
대학이나 연구소의 신기술을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사업화로 유도하여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
- ③ 이익창출 측면 :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여 수익추구를 운영목표로 설정
- ④ 기업가정신 고양 측면 :
학생, 교수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여 창업유도 및 졸업기업의 성공사례로 잠재적 창업수요 증가

전략

- ① 기존건물의 노후화 또는 공동화에 대한 재건축 또는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전략
- ② 공간제공을 포함한 경영, 자금, 공간, 투자,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입주 기업의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두는 전략
- ③ 입주자와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수행주체 모두의 상호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예) 대학 : 사회적 기여도+교수·학생의 창업 기회, 학생 기업 체험, 대학 연구결과의 사업화 실현 등)

1)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정책

- 주요 운영정책은 입주 및 선정 정책, 퇴출 및 졸업 정책, 입주기업 성과 검토 규정, 지식재산권 및 인증 정책, 졸업기업과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관련 정책, 졸업기업의 입지 및 사후관리에 대한 조언과 관련된 정책
- 이러한 정책은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입주, 보육, 졸업,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운영이 필요
- 효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지원서비스는 기업의 특성, 사업환경, 니즈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지원내용 제시와 진단 및 처방 매트릭스를 통해 적합한 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2)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구조

- 창업보육센터 조직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센터장, 매니저, 운영위원회/이사회, 자문위원회 등이 있음

[전문인력의 요건]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5조에서 전문인력으로 명시한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

- ①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②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 ③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기관,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
- ④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센터장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0조 의거 창업보육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교수가 센터장을 겸직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① 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 ② 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 ③ 사업자는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 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위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19조 제2항 및 제 3항
 - 사업자는 입주대상의 심사·선정,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경영 애로해소 지원 등 창업보육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직원(교수·연구원을 포함)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 창업보육센터는 기업의 경영, 기술지도 지원을 상시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교수·연구원 및 경영지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등 내·외부의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매니저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조 17.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1조 의거 창업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
 -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 자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 ③ 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장관은 매니저를 보육센터 근무경력과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등급을 분류, 관리, 고용하여야 한다
 - (선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전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주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 위와 같이 창업보육매니저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므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매니저가 창업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영평가 시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및 인력 운영현황 등의 지표를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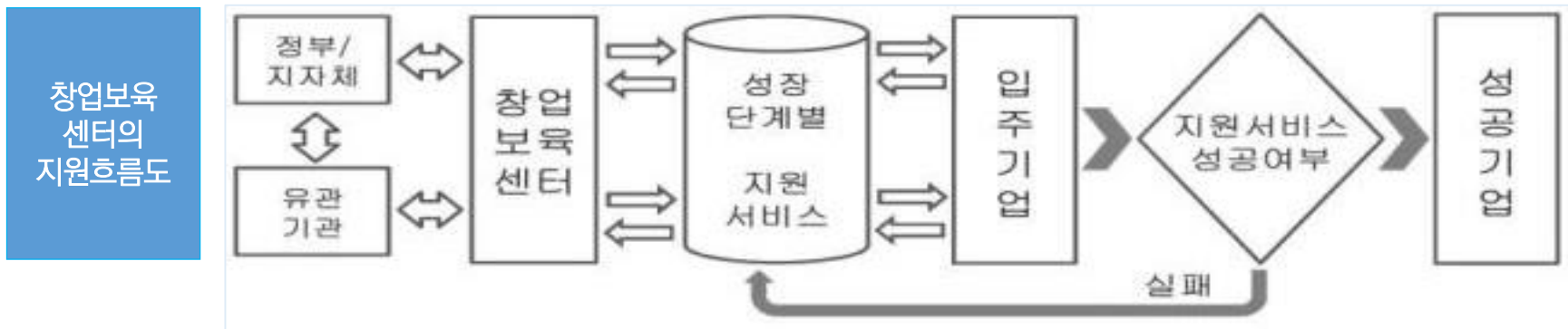
3) 창업보육센터의 자원

- 센터의 자원은 크게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무자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지원서비스 활동의 토대가 됨

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 조직구조에 포함된 센터장, 매니저 ·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Pool)
물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공간,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센터 소속기관의 공용 설비 등
재무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운영자금,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등 센터가 직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 중소기업부 지정 센터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운용요령 제 11조'의거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매년 실시하는 정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4)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서비스

- 창업보육사업을 매우 좁게 정의한다면, 센터 중점 지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센터운영의 핵심요소임
- 센터는 입주기업 성장단계별(창업-기술개발-제품화-판매양산)별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



[입주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서비스]



* 출처 : 충남창업보육협의회(2021), 운영성과집

5) 창업보육센터의 외부와의 연계

- 센터는 여러 외부조직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갖음. 이는 창업보육 활동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원을 요구하며, 다양한 이해 주체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임.
- 외부와의 연계 시 고려사항 : 연계대상, 연계내용, 연계방법 등
- 주요 연계대상 :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지원기관, 정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 투자기관 등

창업보육센터의 내·외부 연계 전략

- 창업보육센터의 부족한 경영자원과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자원과의 연계 전략 중요
- 기업성장단계별 필요자원 조달, 연계활동을 위한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이해 및 추진전략 중요
- 전문가 집단에 대한 DB화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효과적인 활용

창업보육센터의 내·외부 교류 전략

- 창업보육센터간 교류회(전국 및 권역별 창업보육센터 지역 협의회)
-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교류회 등
- 입주기업과 투자자, 산학관계자 등 비즈니스 플레이어와의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개최 등

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시스템 관리

- 운영시스템이란, 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충분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원활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운영시스템 관리는 운영조직, 규정관리, 보안관리, 운영평가관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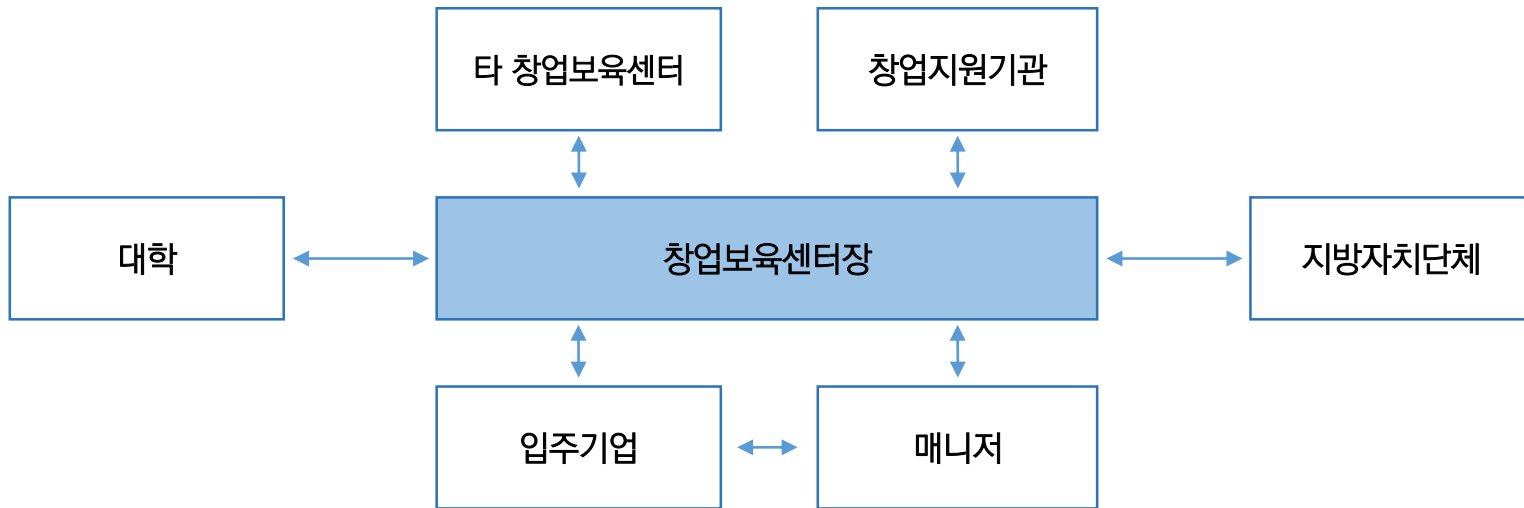
<p>① 운영조직</p>	<p>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구축하여야 할 운영인력과 지원인력의 종류와 역할을 정리</p>
<p>② 규정관리</p>	<p>창업보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 세칙, 지침, 내규, 관련 법규 등을 구비하고 개·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사항을 정리</p>
<p>③ 보안관리</p>	<p>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관리하게 되는 기업의 고유정보와 기밀사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정리</p>
<p>④ 운영평가 관리</p>	<p>센터의 인프라 수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항목을 설정하여 수준별 맞춤형 평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구분 및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에 대한 업무내용을 정리</p>

Ⅲ. 창업보육센터장과 매니저

1. 창업보육센터장
2. 창업보육매니저

가. 센터장의 직무

- 창업보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대표함.
- 직무 환경
 - 내부적 : 대학본부, 입주기업, 매니저와 관계를 형성
 - 외부적 : 다른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형성
- 주요 직무
 - 내부의 직무 : 센터의 관리, 운영, 입주기업 지원, 대학과 입주기업 연계
 - 외부의 직무 : 대학 본부와 협력, 타 창업보육센터와 협력, 창업지원기관과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창업보육센터장의 직무 수행 환경]

나. 센터장의 역할

○ 창업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직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직무	업무	지식	역할
센터 운영	센터 운영계획 수립 입주/졸업/퇴거심사	BI 운영 요령	중장기발전 및 센터 특성화 방안 수립
센터 관리	센터 재정관리 자산관리(보육실/시설/장비) 센터 유지보수 관리 운영인력 관리(운영조직) 기업 사업진행도 평가 기업별 성과자료 관리 기업 부담금 관리 기업현황관리		매니저 위치/역할 지원
입주 기업 지원	입주기업 사업화지원 입주기업 교육지원 입주 및 졸업기업 교류회	기술창업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R&D) 지식재산권 회사설립 마케팅 재무/자금전략(VC/엔젤/벤처)	기업지도 입주기업과 산학자원연계 (R&D, 장비, 시제품 테스트 등)

직무	업무	지식	역할
대학과 입주기업간의 연계	입주기업 산학 니즈 및 대학의 물·인적 자원 파악	입주기업 기술	센터와 대학 (공간, 설비, 기자재) 공유 센터와 학생 연계
대학 본부와의 협력			센터 인식 제고 대학 및 산학협력단과 관계설정
타 창업보육센터와의 연계	교류회	협회 및 지역협의회 역할 정관	타 보육센터 관계 - 협회, 지역협의회 참여 및 활동 (워크숍 참여) - 센터 공동 사업 추진
창업지원 기관과의 연계	사업계획 및 보고	비지원 유관기관 지원제도	유관기관연계 (중소벤처기업부, KOBIA,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재단, 지역 창업지원기관 등)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계획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다. 센터장의 필요 역량

필요 역량	주요 내용
① 의사소통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 ○ 언어적 의사소통 :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 비언어적 의사소통 : 표정, 몸짓, 자세, 동작, 옷차림 등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
② 종합적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기업이 경험하는 제작 기술, 시제품 제작, 자금조달, 마케팅 등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업무들이 대부분 ○ 창업보육센터의 발전 방향과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 기업의 요구,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
③ 행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센터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행정능력이 필요
④ 지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지원 방안 계획 수립, 문제 해결 방안 수립과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자원, 입주기업의 사업진행 상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매니저를 적극적으로 활용 ○ 센터 운영의 성과 목표, 센터 내부의 자원 활용 등의 계획수립과 의사결정에 매니저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시키며 일정범위에서 매니저에게 권한을 부여

필요역량	주요내용
<p>⑤ 대인관계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보육기업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 ○ 대학 내부 또는 외부기관과 관계를 맺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p>⑥ 유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도록 노력 ○ 센터의 내부 상황의 변화, 외부 환경의 변화, 기업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이 어려워지는 것을 빠르게 받아들여서 대안을 만들고 대처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

가. 매니저의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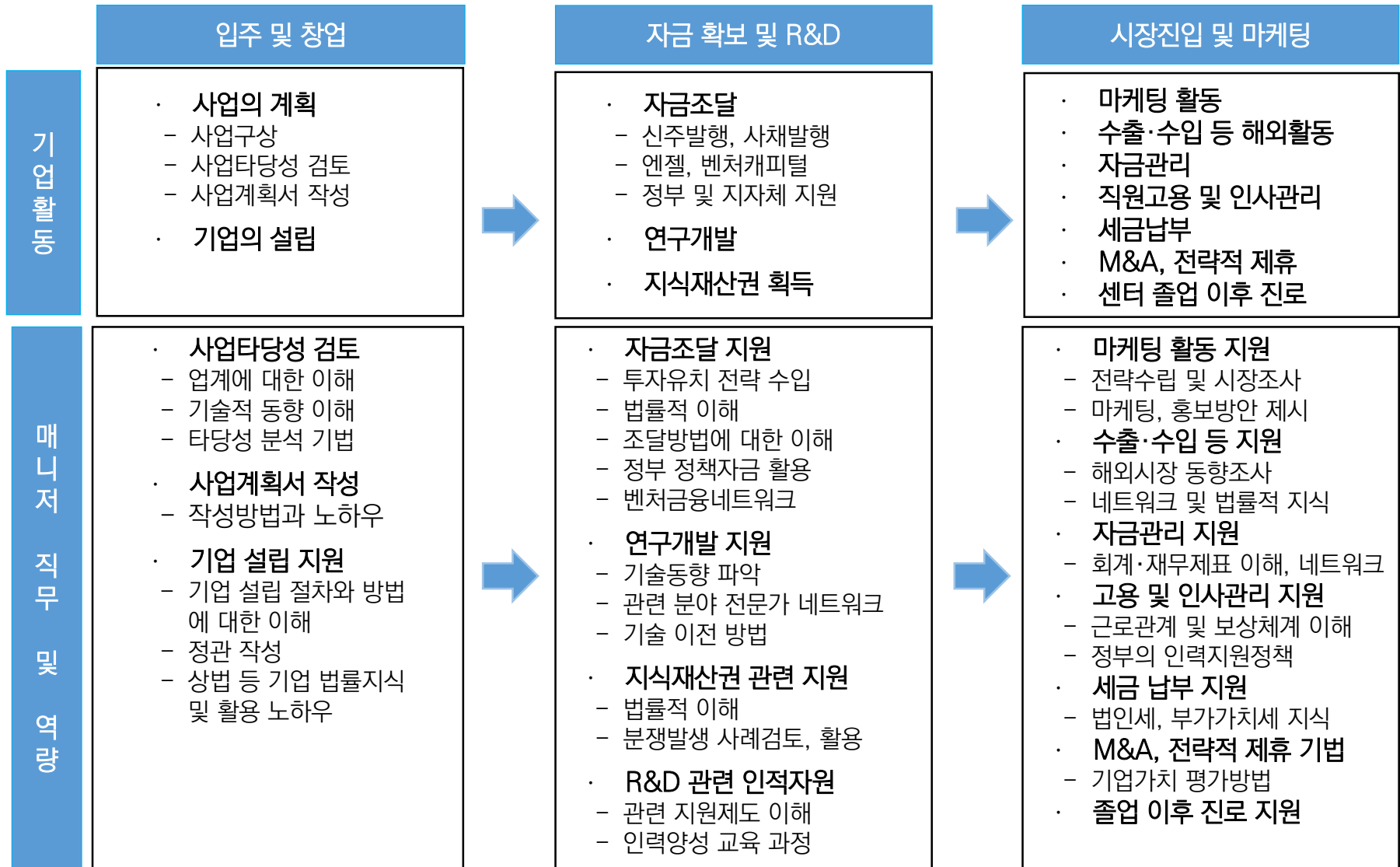
- 창업보육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함(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1조 3항).
- 창업보육매니저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초기 창업기업을 입주에서 졸업까지 보육·지원 및 관리하여, 창업자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함.
- 창업보육매니저는 기업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 마케팅 및 관리자원을 개발하고 결집시켜 사업화를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참고] 창업보육매니저의 직업적 기능

* 출처 :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정보

- 창업자의 창업 전 단계부터 창업 이후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전 과정에 관여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
- 창업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것
- 안정적인 창업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창업 기업을 관리 및 지원하는 직업

[기업활동과 매니저의 직무 및 역량]



나. 매니저의 역할

- 창업보육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업무지원을 포함해서 입주기업의 선정, 평가,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
- Lichtenstein et. Al. (2004)은 창업보육센터 성공적인 요인은 창업보육센터 매니저의 역할을 강조하고, 성공적인 지원서비스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제약조건을 토대로 입주기업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Rice(2005)는 창업보육센터 매니저가 입주기업 지원에 참여하는 정도와 시간 할당 정도에 따라 입주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 김영문 외(2017)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과 입주기업 선정,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입주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기술개발 연계, 자금확보, 판로개척 등 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매니저의 역할이 필요함을 주장함.
- 창업보육매니저는 입주 창업자 선발 · 면담으로 출발하여, 창업자 전반에 걸쳐 창업 전 과정에 대한 코칭, 멘토, 지도, 대행, 관찰, 평가 등 고도의 책임성으로 입주한 창업자를 보육,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함

[창업보육매니저의 역할]

구분	역 할	자 격
<p>창업보육 전문(전담) 매니저</p>	<p>입주기업 유치 및 선정, 계약 절차 관리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입주기업 사업진행도 평가관리 입주기업 운영 관리 및 입주보육실 관리 졸업, 퇴거 절차 및 졸업기업 성과관리 운영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자체예산의 관리 및 결산관리 입주기업 부담금 납부 관리 센터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운영에 대한 관리 운영위원회 관리 공용장비 및 공용시설의 유지 관리 입주기업의 보안관리 창업보육 관련 지원사업의 참여 및 수행관리 창업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창업보육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 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실무 운영과 관리</p>	<p>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참조 제 2조 17항 제 21조</p>

다. 매니저의 필요역량

- 매니저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운영관리를 위한 필요지식·보육스킬과 네트워크 등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센터 전반에 대한 지식, 창업자 대상 창업 절차안내, 입주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각종 지원을 위한 지식, 그리고 졸업기업과 실패기업의 재도전을 위한 지식 등을 보유하여야 함.

[창업보육분야별 매니저의 필요 역량]

창업보육분야		필요역량	
주요내용		필요지식	보육스킬
① 창업보육센터 운영	· 보육사업·센터 이해 · 의사소통·네트워킹	· 창업 관련 법규 및 절차 · 창업보육사업 이해 · 창업보육센터 이해 · 상담심리지식 · 일대일 카운슬링 기법	· 기술창업자 특성 이해 · 멘토로서 실무경험 전수 · 면담심리 및 대화 기법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 타 센터와 연계/ 전문가 네트워크구축 · 입주졸업기업교류회
② 창업준비과정 안내	· 창업자 자기분석 · 사업아이템 탐색 · 특허검색 · 소비자 및 시장분석	· 창업자가 목표로 하는 제품, 시장, 업종, 산업에 대한 폭넓은 정보	· 이를 바탕으로 한 판단력
③ 창업기업 입주안내	· 입주시혜택 · 보육·지원내용 · 입주요건 및 절차	· 입주광고에서 입주까지 행정처리 전과정에 대한 이해	· 가능성있는 창업자 알아채기 · 창업자별 보육계획서 작성하기 · 분기별로 체크하기

창업보육분야		필요역량	
주요내용		필요지식	보육스킬
④ 창업준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아이템선정 · 사업타당성분석 · 사업계획서작성 · 사업자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아이템선정 · 사업타당성분석 · 사업계획서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 · 사업자등록 · 정관 작성 지식 · 상법 등 기업 법률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아이템 선정 · 사업타당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에 대한 이해 - 기술적 동향 이해 · 타당성 분석·판단력 · 사업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방법과 노하우 제시 · 사업자등록
⑤ 입주기업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 연구장비이용하기 · 개발기술보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로기술 이해하기 - R&D 관련 인력지원제도 - 관련 지원제도 이해 · 연구장비이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가 원하는 장비에 대한 지식 - 창업자가 원하는 장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하고 있을 것 · 개발기술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등록절차, 보호·관리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 기술타당성 검토판단력 ·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핵심전략코칭 (목표시장) · 애로기술 해결해주기 ·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시장조사 제공 · 관련분야 전문가네트워크 연계 · 연구개발비 및 인력확보 지원 · 창업자가 원하는 장비를 수월하고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발기술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분쟁의 극복 기법 - 법률적 이해 - 분쟁발생 사례검토, 활용

창업보육분야		필요역량	
주요내용		필요지식	보육스킬
⑥ 입주기업 디자인 및 인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개발 · 시제품제작 · 제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개발 · 시제품제작 · 제품인증 · 인증의 종류와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사양과 용도에 맞는 디자인 설계 코칭 · 시제품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과 비용측면에서 적절한 제품이 제작될 수 있게 코칭 · 제품인증 절차 제시 및 지원
⑦ 입주기업 성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인·허가 · 공장설립 · 마케팅 ·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인허가 · 공장설립 · 기술창업마케팅 · 시장조사 방법 · 홍보·광고 기법 · 마케팅 전략 수립방법 · 수출·수입 관련 지식 · 전략적 제휴 개발 기법 · 관련 법률적 지식 · 외국어 사용 · M&A - 기업가치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인허가 · 공장설립 ·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수립요령 - 시장조사요령 - 마케팅, 홍보방안 제시 · 수출·수입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동향조사 제공 - 관련 기관 네트워크 - 대외 신뢰도 확보 지원 - 시장(제품)에 대한 타당성 검증 - 마케팅 지도 ·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성사 지원

창업보육분야		필요역량	
주요내용		필요지식	보육스킬
<p>⑧ 입주기업 경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인적자원 · 자금·투자·재무관리 · 회계관리 · 세무관리 · 경영지식의 습득·적용 · 사업정보의 습득·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관계 관련 법률 이해 - 보상체계에 대한 이해 - 정부의 인력지원정책 · 자금·투자·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적 이해 - 조달방법에 대한 이해 - 정부 정책자금 활용 - 벤처금융네트워크 - VC의 기업가치평가 기법 - 벤처금융에 대한 지식 - 투자관리 및 자금관리 - 재무관리 지식 · 회계관리 · 세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실무지식 -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식 · 경영지식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 지식 - 사업정보의 수집·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인적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기술, 네트워크기법 - 인력채용방법·요령 · 자금·투자·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확보기법 - 자금신청서 작성지원 - 유리한 투자받는 법 - 재무관리 요령 · 회계관리 · 세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전문가 소개 · 경영지식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획 스킬 - 리더십 개발 · 사업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정보가 입주기업에게 필요한지 - 이러한 정보를 어떤 수단으로 제공할 것인지

창업보육분야		필요역량	
주요내용		필요지식	보육스킬
⑨ 입주기업 졸업 및 퇴거	· 졸업 or 퇴거	· 졸업· 퇴거의 기준	· 기준적용의 유연성 · 졸업기업 네트워킹구축 · 졸업기업 기본정보유지
⑩ 실패기업 재도전지원	· 성공한 사업가란 · 실패에 대한 좋은 태도 · 실패극복 성공사례 · 재도전 지원제도	· 실패창업자의 심리상태 · 재도전지원제도	· 실패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 · 실패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 · 객관적 대안제시능력

라. 매니저의 전문성 및 비전

- 필수 자격증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이론시험과 실무수습교육을 거쳐서 취득
 -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 권장 자격증

자격증명	주관기관	자격증명	주관기관
경영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행정사	행정자치부
기술지도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세무사	국세청	기술경영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변리사	특허청	기술평가사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공인회계사	금융감독원	투자평가사	한국생산성본부
기술거래사	한국기술거래사회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양성과정	한국벤처투자(주)
창업지도사	한국창업지도사 협회	데일 카네기코스	(주)성공전략연구소

○ 매니저의 비전

- 우리나라 경제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객체로서 경쟁시대에 살아남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창업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경제성장의 지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임.
- 이에 창업보육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확장될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부분의 역량 강화도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봄.
- 창업보육매니저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ICT, 융복합기술 및 4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 경제정책의 최일선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창업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지는 막중한 위치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업보육매니저의 장기적 비전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음.
 -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창업 분위기의 확산과 지속
 - 창업수요 대비 전문가의 부족
 - 교육·훈련된 역량 있는 창업보육 매니저 부족
 - 창업관련 전문직으로서 창업보육매니저의 역할과 비전, 진로의 확대
 - 창업보육매니저의 위상 확대

IV. 창업보육 관리단계

1.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업무
2. 창업보육프로세스 및 관리 업무

* 센터장과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창업보육센터의 일상적 업무처리와 절차로 창업보육센터의 업무처리를 이해함과 아울러 센터운영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을 알 수 있음.

가.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

- 창업보육센터의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최적화된 운영을 통하여 창업보육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함
- 창업보육센터가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전략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능의 실천 시스템을 통해 효율화 된 창업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센터 운영계획 수립 실행절차]

실행절차		비고
전략 수립	⇒	운영목표 설정
↓		
사업계획서 작성	⇒	운영사업계획, 예산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조정	⇒	변경사유와 내용정리
↓		
사업계획서 완성	⇒	운영위원회 심의 / 확정
↓		
사업실행 및 실적관리	⇒	문제점 개선

나. 센터 운영인력 관리

- 운영인력의 기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기준을 적용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별로 제정된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운영인력 구성 및 역할]

창업보육센터장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운영위원회	운영보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대표자로서 운영과 관리 총괄 · 센터의 행정, 인사, 연구, 재무, 기업 지원에 관한 관리 · 시설 및 자원의 관리 · 대외 계약 및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업 유치 및 선정, 계약 절차 관리 ·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입주기업 사업진행도 평가관리 · 입주기업 운영 관리 및 입주보육실 관리 · 졸업, 퇴거 절차 및 졸업기업 성과관리 · 운영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자체예산의 관리 및 결산관리 · 입주기업 부담금 납부 관리 · 센터 제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운영 관리 · 운영위원회 관리 · 공용장비 및 공용시설의 유지 관리 · 입주기업의 보안관리 · 창업보육 관련 지원사업의 참여 및 수행관리 · 창업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 창업보육서비스 개발 및 제공, 입주기업 육성 · 센터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실무 운영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의 심사·선정 · 센터 운영성과 평가 · 입주자 기술·경영 애로해소 지원 방안 제안·심의 · 예·결산 심의 · 센터 운영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심의 ·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및 지원 업무 보조

다. 센터 재정관리

- 센터 자체자금은 입주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입주기업 부담금 수입으로 입주보증금, 입주관리비, 시설·장비 사용료, 보육사업 발전기금 등으로 구분함.

[입주기업 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의 종류	부담금의 성격	비고
입주보증금	입주기업의 입주 시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예치금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입주 시 납부 졸업·퇴거 시 반환
관리비	입주기업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보육료	월/분기/반기/년
	전기, 수도, 위생, 보안 등 매월 부과하는 공과금	센터별 상이
시설·장비 사용료	연구용 장비, 사무기기, 실험장치 등 유료로 제공되는 공용장비의 사용료	매월 납부
보육사업 발전기금	입주기업이 보육사업을 위해 기증하는 기부금, 주식 또는 현물	입주 시 계약에 의거하여 시행
국·공유재산 사용료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료(사립대학교 제외)	1년, 반기 정기적으로 부과

1) 관리비

- 관리비는 입주기업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보육료와 공과금 등의 수용비로 구분하며 매월 납부가 일반적이지만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운영 가능
- 보육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기업의 입주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리비 불이행 대처 방법
 - 입주 전 관리비 이행 지급보증보험 가입 :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
 - 입주보증금의 관리비 상계 : 보증금의 목적이 미납된 관리비의 대체에 있는 만큼 가능한 부분이며, 단 내용증명으로 그러한 사실을 상세히 알리거나 입주기업 대표자에게 서면 등으로 안내
 - 명도소송 :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강제집행할 때 미납금 반환 청구도 병합하며, 기간은 약 6개월 이내이고 소송비용이 생기지만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해당기업에 일정 부분 청구 가능

2) 보육사업 발전기금

- 센터 및 창업과 연계된 사업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지정 기부금
- 기금 납부 유형은 지분참여, 로열티, 성공불제, 정기 납부 등이 있으며, 현금이나 현물, 또는 주식으로 납부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한 유의사항
 - 기금의 약정 : 입주계약서 작성 시 업체 대표자에게 보육사업 발전기금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하고 납부 유형 중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
 - 기금의 영수 :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현물,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센터는 기금 수령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며 영수증에는 기부자에 대한 사항과 아울러 기부 단체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
 - 기금의 관리 : 조성된 기금은 발전기금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지정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시에는 감사원 등의 점검 과정에서 감사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 추징이나 과태료 부과

구분	기부금액의 기재 기준
현금	현금 기준으로 기재
지분(주식)	주식의 액면가로 기재
현물	기업의 회계장부에 평가된 장부가액으로 산정(미기재 된 현물은 시가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
부동산	부동산의 시세 기준으로 산정

라.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관리

1) 보육실 관리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센터는 지정 당시의 보육실로 등록한 기준이며, 임의로 변경 불가능함
- 보육실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창업보육사업과 무관한 기관 용도로 변경 불가능함
- 2014년도 기준 센터 신규건립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건립 완료 후 총 면적의 60%이상을 보육실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입주한 기업이 사용 중인 보육실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센터 운영규정과 입주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3개월 이상 공실률이 40% 이상인 센터의 경우에는 개선 권고를 거쳐 지정 취소로까지 이어지므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실관리를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 인프라를 고려한 센터 특성화 및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축·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을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

2) 공용 시설 및 장비

- 센터 시설은 입주기업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회의실, 휴게실, 교육공간 등을 말함.
- 센터 장비는 사무용, 연구·개발용, 실험용, 설계·디자인용 등으로 입주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수요가 많은 장비를 구입하여 대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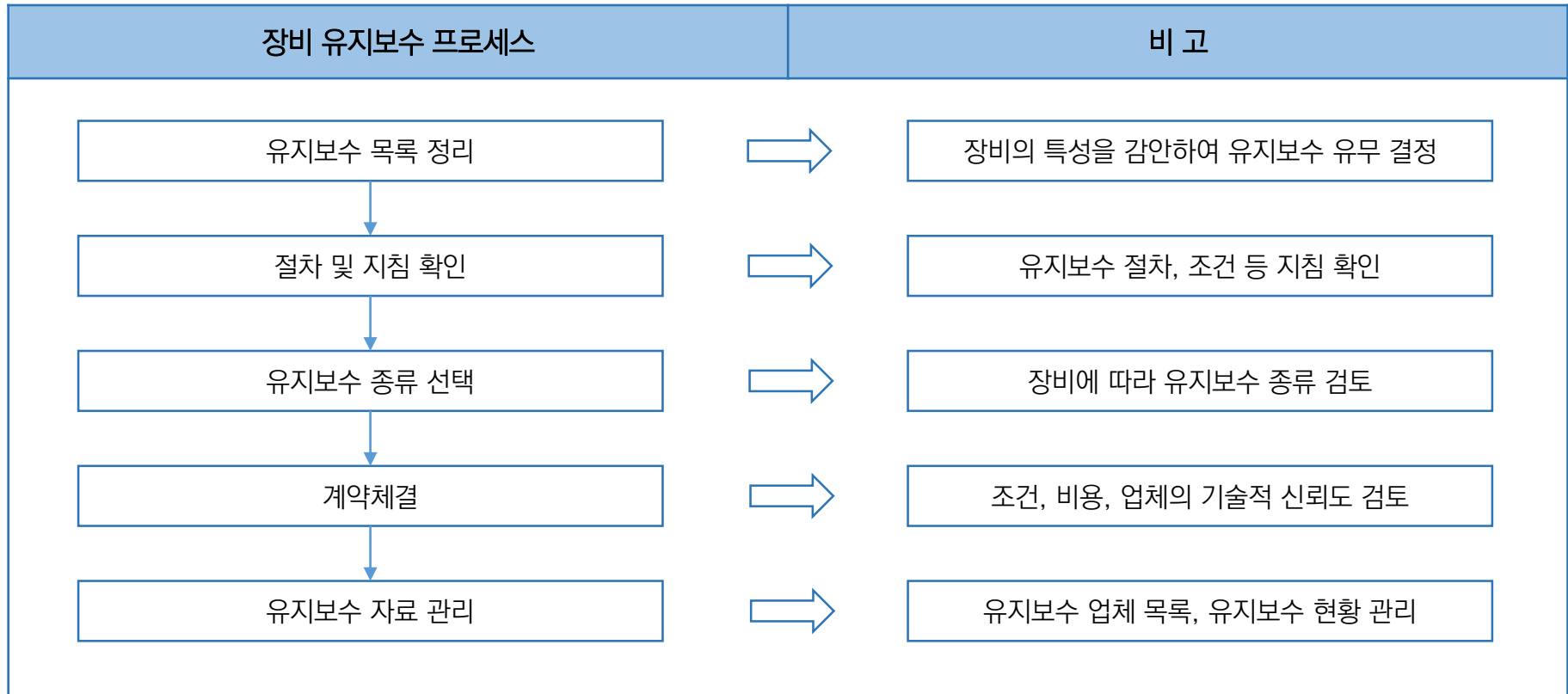
[장비 구입·관리 절차]

장비 구입·관리 프로세스	비 고
구입 수요 파악	입주 업체 수요 조사
↓ 운영위원회 심의	↓ 수요 적절성, 예산 계획 심의
↓ 집행 예산 수립	↓ 사양, 수량 선정 후 견적 의뢰
↓ 구매 계약	↓ 구매 절차에 따름
↓ 관리대장 등록	↓ 관리대장, 공용장비 현황 등록
↓ 활용 계획 수립	↓ 사용료, 대여기간, 관리책임자 등

3) 장비 유지보수 관리

- 센터는 등록된 공용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관리 여부를 검토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유지보수 계약 시 유지보수 업체의 절차 및 지침을 확인하고 실제 유지보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공용 장비의 유지보수 관리 절차]



마. 기업현황 관리

- 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주기업 현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함

[기업 현황 관리 항목]

현황 관리 항목	통보사항	통보시기	승인사항 해당여부
입주기간	계약기간, 이행보증보험의 갱신	6개월~40일 전	○
창업아이템	입주 당시 창업아이템 변경 내용	변경 전	○
상호 변경	상호	완료 후	X
대표자 정보	대표자, 자택주소, 연락처	변경 즉시	X
사업장 소재지	입주 후 본점 소재지, 졸업 후 소재지 변경	변경 후	X
회사 형태	개인에서 법인 변경	변경 후	X
종업원 현황	고용인원의 변경	자료요청 시	X
매출 현황	매출증감 현황	자료요청 시	X
지식재산권·인증	출원·등록·지정 관련 사항	자료요청 시	X
지원사업 선정	정부·지자체·지원기관 지원사업	선정 후	X

1) 입주기간

- 입주기간은 주로 매년 1년 단위로 하며, 입주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8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연장 가능
-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연장신청서를 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연장가능 여부, 기업의 재정적 여건, 기업 형편 등을 검토하여 자체 심사 과정을 거쳐 계약 만기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
- 계약기간 최소 30일 전에 만기예고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입주 조건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입주 계약기간을 항상 사전에 파악

2) 창업아이템

- 창업아이템은 입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부분으로 입주 당시 창업아이템이 변경될 경우에는 입주 평가 기준에 따라 재심사

3) 상호 변경

- 예비창업자의 신규 사업자등록과 업체 입주 당시 사업자등록상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센터에 통보
- 상호 변경 통보를 받으면 센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입주업체 관리대장, 입주 관리카드, 입주 계약서 등에 상호 표시 부분을 정비

4) 대표자 정보

- 대표자의 경우는 업체 대표자의 변경, 주민등록주소지, 연락처 변경에 대해 사유가 발생하는 대로 센터에 통보

5) 사업장 소재지 및 회사 형태 변경

- 사업장 소재지는 센터 입주 후에 센터 주소지로 본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 졸업 후에는 이전할 주소지로 변경되었는지를 확인
- 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물론 법적 책임의 주체도 법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서 등의 관리문서를 정비

바. 외부기관 협력

1) 창업보육센터 간 교류

- 입주기업의 보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센터간의 정기적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능력 향상이 중요
- 센터 간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보육 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아이디어 발굴 및 협력모델 구축

2) 유관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협력

- 입주기업 지원 및 센터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

[유관기관 사업계획 및 보고 실행 절차]

유관기관 사업계획 및 보고 실행 절차	비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 정보 탐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시기별, 지원기관별, 자금종류별 센터에 맞는 사업 탐색 및 지원 가능 여부 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적합성 파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탐색한 정보의 센터에 대한 적합성 파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계획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협약체결 및 자금조달 완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 선정 시 협약내용 및 추가서류 등 검토, 집행지침 및 협약서 등을 숙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시행,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업운영, 사업결과 보고</div>

* 창업보육프로세스 및 관리단계에서는 센터의 입주기업 모집에서 졸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입주, 보육, 졸업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업무의 종류와 내용을 기술하고자 함.

[입주관리]

모집진행 절차 → 선발 절차와 기준 → 입주 승인 통보 및 입주계약 체결

[보육지원 및 관리]

사업진행도 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지도/교육/사업화/멘토링/네트워크 지원 → 기업별 성과관리

[졸업 · 퇴거 관리]

졸업 및 퇴거 구분 → 졸업 또는 퇴거 절차 → 졸업 후 관리

가. 입주 관리

- 입주기업의 모집부터 선정, 계약과정의 입주관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입주기업 선정 프로세스]

절 차		내 용
입주기업 모집 계획 수립	⇒	지원자격, 선발방법, 입주조건, 제출서류 등
↓		
입주기업 모집 공고	⇒	입주모집 공고 수단 및 매체 선택
↓		
입주신청서 작성	⇒	입주신청서, 센터및지원서비스, 시설등소개
↓		
서류심사	⇒	지원자격, 제출 구비서류 목록 확인
↓		
발표심사 일정 통보	⇒	발표심사 및 발표자료 제출 일정
↓		
발표심사	⇒	운영위원 입주신청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입주기업 선정 및 통보	⇒	내부 문서처리 후 선정 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계약내용 확인, 입주계약체결, 발전기금약정

1) 입주기업 모집 계획 수립

- 보육실의 공실 현황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입주자 모집 계획 수립
 - 정기모집 : 연중 1~2회 정기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
 - 수시모집 : 공실 현황에 따라 수시로 입주 모집

2) 모집광고

- 모집광고 내용 : 입주자격, 입주공간, 입주부담금, 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서비스 등
- 입주자 모집 광고 방법
 - 센터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시스템(BI-Net, www.bi.go.kr)
 - K-스타트업(창업넷, www.k-startup.go.kr)
 - 일간신문 및 방송 : 지방 및 중앙일간지, 방송매체
 -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 홈페이지 : 도, 시, 군, 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창업지원기관 등

3) 입주신청서 접수

- 입주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방문, 우편 등으로 접수
- 서류 심사 전 전문매니저의 사전 상담 실시
 - 입주 문의 및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점검
 - 센터 소개 및 지원사항 등을 안내
 - 신청기업의 입주 요건 부합여부 파악 등
- 입주자격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6조(입주대상자) 의거
 -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입주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이 운영하는 보육센터, 투자전문형 지정 BI는 입주 대상자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입주대상 업종은 각 센터 운영전략(특화분야)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예비창업자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4) 서류심사

- 입주신청서의 내용과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및 첨부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입주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파악
- 입주 기본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1차 심사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신청기업의 창업 연도를 확인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여부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함

[서류심사 검토 자료]

No	검토자료	확인사항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기재사항 누락 여부 확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비창업자 제외)	창업년월일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 3일 이내)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4	신용불량자확인서(신용정보회사 최근 7일 이내)	대표자의 신용불량 여부
5	재무상태표 (개인기업도 해당, 예비창업자 제외)	자본금, 순이익, 부채 현황 등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이사 현황, 설립일, 자본금, 소재지
7	지식재산권 및 경영성과 등	지식재산권 및 매출 등의 경영성과 확인

5) 발표심사일정 통보

- 대상기업에게는 발표일로부터 최소 5일 이전에 발표심사 일정과 준비사항을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통보하며 발표 자료는 발표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 과정에서 습득된 사업아이템이나 개인정보 및 기업 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함

6) 발표심사

-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전문매니저가 예비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보고한 후, 입주신청자가 자기소개와 아이템에 대해 10~15분 정도 발표하고, 5~10분 정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발표심사의 입주 심사표를 취합, 입주 종합심사표에 정리하고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입주승인 여부를 결정

7) 입주자 선정 통보와 계약 체결

- 입주계약 사항의 일반적인 내용 : 입주기간, 입주공간(보육실), 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보육사업 발전기금 협약, 센터의 지원사항 등
- 입주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보관하는데 계약서는 별도의 계약서 관리 파일을 비치하여 관리
- 입주계약 당사자는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임(법적주체)
- 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입주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가입 하도록 협의하고 센터와 계약한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 입주 후 입주기업 관리카드 및 BI-Net 전산입력자료 등 보육 관련 제반 서류를 갖추어 작성 후 제출하도록 하며, 입주기업들의 신상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수정하여 최신 자료로 기록 유지

[입주계약서 주요 기재항목]

기재 항목	주요 내용
입주기간	일반적으로 1년단위 계약, 매년 자체평가를 거쳐 3~5회 연장 가능
목적물의 표시	입주호실 및 면적의 표기
입주부담금의 납부	창업보육료, 관리비에 관한 사항
보육사업발전기금*	지분, 현물, 현금 기부 여부
계약의 해지 및 퇴출	기업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조치 사항
기타	센터 입주기간 동안 준수하여야 할 규정 등

*보육사업 발전기금의 약정

-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센터와 입주기업 대표는 보육사업 발전기금의 운영 취지안내 및 협의를 통하여 보육사업 발전기금 기부약정서를 작성
- 보육사업 발전기금의 납부방법은 센터별로 협약에 의거하여 다양하게 운영

유형	내용	장·단점
지분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기업에 한하여 납입자본금 중 일정 비율에 의해 지분을 제공받는 방법 -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1~5% 제공 - 무상 제공 인수 후,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따라 추후 센터가 유상 증자에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뢰성 확보 - IPO 시 높은 수익률 - 성장역량이 낮은 초기 기업의 특성 때문에 지분의 수익실현이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매우 낮음 - 졸업 후 지분 및 기업 관리의 문제
로열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상호 간에 정한 기간 동안 제공받는 방법 - 손익분기점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출액의 경우 1% 이하, 영업이익의 경우 1~3% 제공이 일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현금수익 실현 - 창업 초기에는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기업이 적고, 매출규모가 작음 - 졸업 후 관리의 문제
성공 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현금, 주식, 스톡옵션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입주계약 시 보상금액과 방식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공 판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곤란
정기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기간 중 기업규모, 계약면적 등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 일괄 납부 또는 년, 반기별로 계속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율에 비례하여 매년 일정 금액의 현금수익 실현 - 성과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기업은 경제적 부담 우려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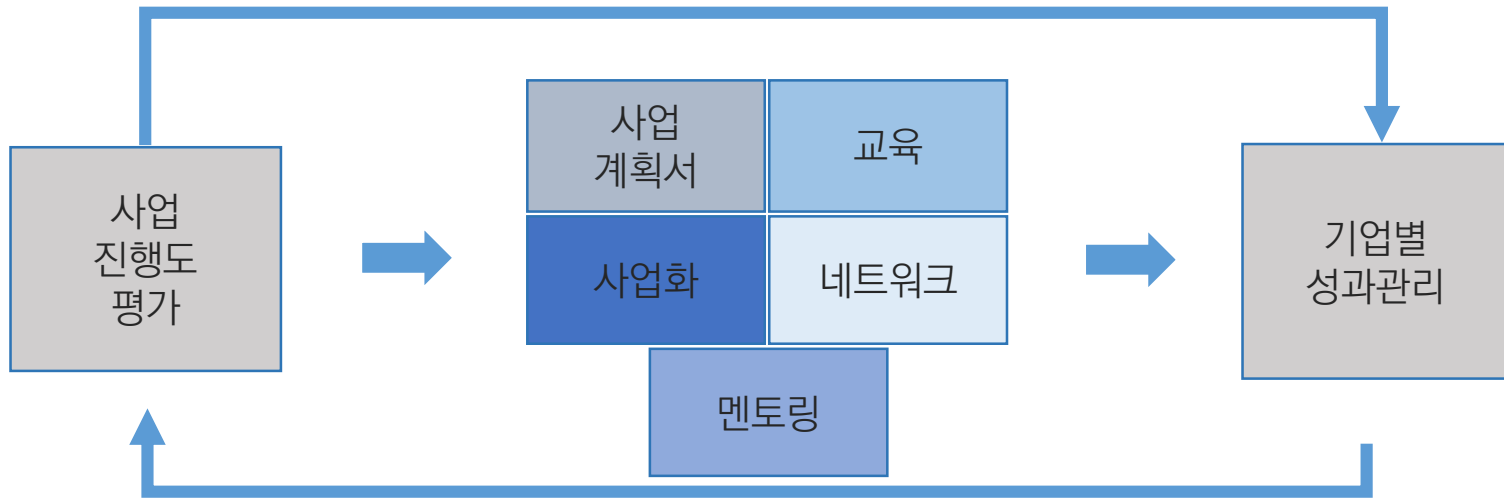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참고 : 2021. 12월 개정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

나. 보육지원 및 관리

- 창업보육지원 및 관리는 입주 기간 동안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진행도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에게 적합한 사업계획, 교육, 사업화, 네트워크,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관리함

[보육 지원 관리 현황도]



관리 사항	주요 내용
사업 진행도 평가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니즈 파악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사업 운영 전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지도 관리
교육 프로그램	경영 · 기술 · 투자 등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리
사업화 지원	경영 · 기술 · 마케팅 · 시제품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멘토링 등 전문가 연계	기업의 사업진행 과정 중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적합한 전문가 연계
네트워크	입주졸업기업 정기 교류 및 비즈니스 플레이어들과의 네트워킹 운영 관리
기업별 성과자료 관리	사업화 및 지원 성과를 이력화 하여 DB 구축

1) 사업진행도 평가

- 센터는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개선, 호전 또는 정체, 악화 등의 성장성 여부를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함
- 사업진행도평가는 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일정한 기간에 따라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이며 보육의 본질적인 활동임

[사업진행도 평가 추진 절차]

평가 프로세스	비고
㉠ 사업진행도 평가 계획 수립	일정, 대상, 기준, 시행방법, 결과조치 등
㉢ 사업진행도평가 서류 접수	평가 관련 서류 접수
㉣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실시	제출 문서 검토, 면담, 질의 등
㉤ 평가표 및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표 및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 통보	문서 통보
㉦ 사후 계획수립 및 실행	대표자 면담, 추후 실행결과 점검

㉠ 사업진행도 평가 계획 수립

- 연초에 사업진행도 평가시기를 계획하고, 시기에 맞추어 진행도 평가 시행 목적과 취지를 입주기업에 설명하고 평가 위원 위촉, 기업 제출서류 목록과 양식 구비 절차를 확정하여 실시계획을 해당 업체에 공지

㉢ 사업진행도 평가 서류 접수

항 목	구비서류
평가 자료	① 경영성과표(소정양식) ② 매출증빙자료 : 당해 연도 매출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③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 ④ 지식재산권 및 인증 관련 자료 ⑤ 자금유치 관련 자료(투자, 정책자금, 보증, 대출 등) ⑥ 고용증빙자료 : 4대 보험 가입증명 ⑦ 마케팅 활동 실적 ⑧ 각종 지원 유치 실적 ⑨ 발표자료(업체 현황, 기술개발 현황, 매출 등의 사업화 현황, 향후 계획)

◎ 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 실시

- 사업진행도 평가는 사업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원 여부와 효과의 유무를 살피는 것이 목적임. 또한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센터 관계자와 공유하여 효과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방안을 검토
- 평가위원은 센터 운영위원(업종별 전공교수, 산학유관기관 등) 및 외부 전문가(유관기관, 벤처캐피털, 컨설턴트 등)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 정량적 지표 및 대표자의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인 평가 병행을 권장
- 향후 기술의 부가가치와 위험을 검토하고,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

㉔ 평가표 및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위원은 평가 종료 후 기업별로 평가표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사업진행도 평가사항]

항목	내용
평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매출 신장 현황은 양호한가? ② 수익성은 양호한가? ③ 사업계획 추진 이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매출목표 및 추진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목표와 계획은 타당한가? ⑤ 자금조달 능력 및 재무상태는 양호한가? ⑥ 제품(서비스)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⑦ 제품(기술)의 진입장벽 수준과 수명주기는 어느 정도인가? ⑧ 향후 추진할 사업계획은 이행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가? ⑨ 마케팅 전략과 추진 상황은 적절하며 양호한가? ⑩ 리스크 요인과 문제 인식을 정확히 하고 있으며 조치 계획은 적절한가? ⑪ 대표자의 경영 의지와 태도는 바람직한가?

㉔ 평가결과 통보

-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해당기업에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 평가결과서에는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첨부
-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평가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후 결과를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진행도 평가 등급별 조치사항]

평가 등급	조치 사항
양호	개선 또는 미흡한 보완 사항 자체 진행
보완	대표자 면담 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한 컨설팅 진행 기업의 컨설팅 참여 성실도 및 수행 컨설턴트의 만족도 평가 문제점 개선 결과 확인
위험	대표자 면담 후 퇴거결정 또는 단기 개선계획 제출 요청 단기 개선계획(안) 승인 여부 결정 퇴거 또는 단기(3개월) 입주 연장 3개월 후 재심의

㉕ 사후계획 수립 및 실행

-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사후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한 사후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추후 결과를 관리

2)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본인의 사업 성공가능성 판단자료로 활용되기도 하고 외부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
- 사업계획서에 담아야 할 조사자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폭넓은 요소들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관리하면서 사안별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센터 관리자는 기업이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아이템별 사업계획을 직접 만들고 수정, 보완 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관리

[사업계획서 주요 용도]

창업자 입장에서의 용도	투자자 입장에서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문제점 발견 가능 (성공가능성 점검) -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 동업자 임원급 인사들과 의사소통의 중요한 보조 자료 - 제안 사업에 대해 짜임새 있게 작성된 사업계획은 주변 지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 수단 - 사업계획은 창업 초기의 업무추진 계획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행동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은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투자자가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료 - 창업자와 경영진의 능력평가 자료로 투자자들이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창업자와 경영진이 계획사업을 성공시킬 능력을 확인 가능 - 투자자들은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제안사항(업계동향, 시장추이, 경쟁상태, 사업의 독창성, 소요자금, 재무상태 등)들을 검토 후 사업의 타당성 평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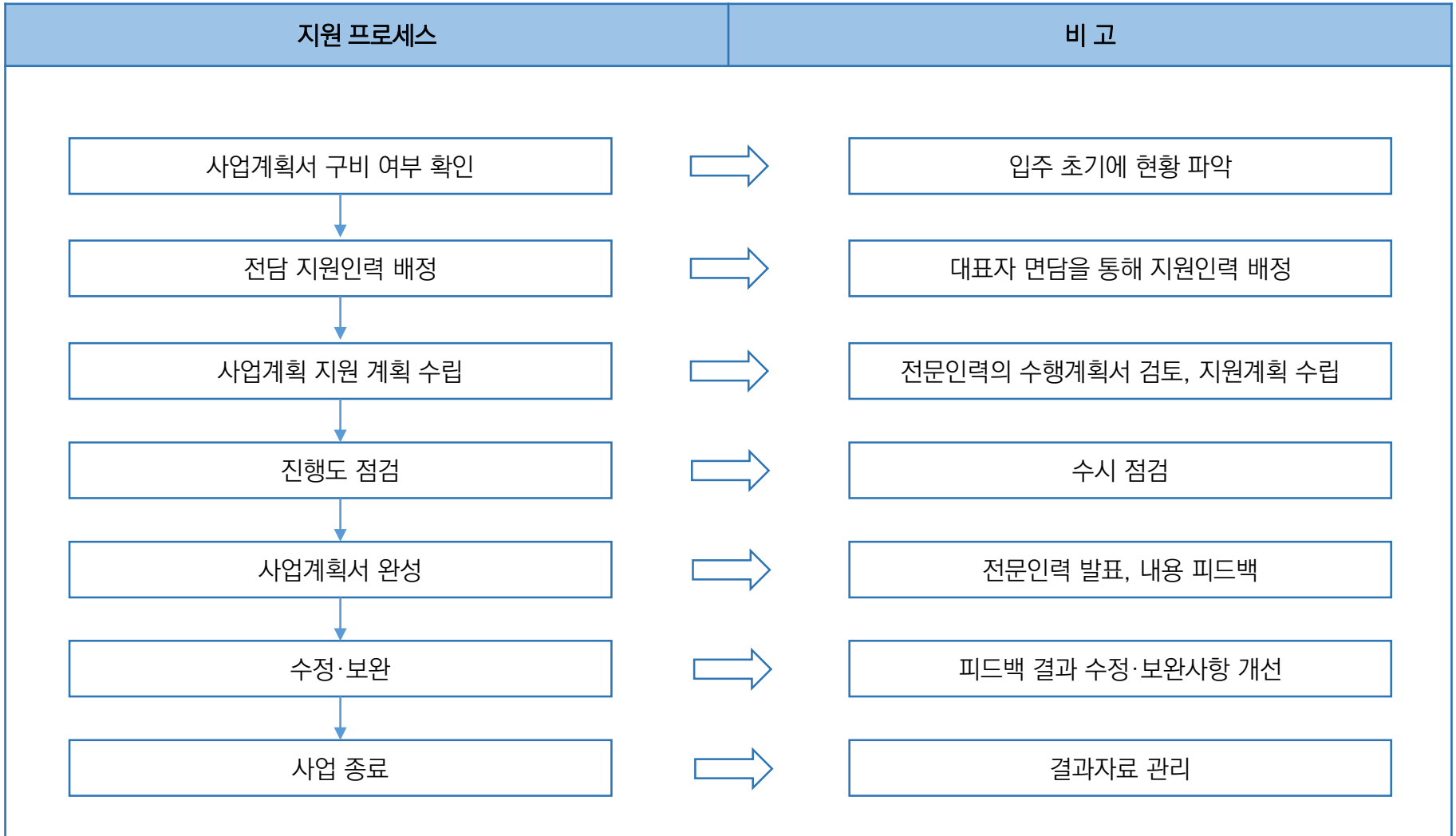
[용도별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용도별	작성 포인트
투자유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젤, 벤처캐피탈 등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투자기관의 투자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 · 투자자금 회수 방안을 반드시 제시 ·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는 시장의 장래성, 사업의 발전성과 수익성, 경영진의 능력과 신뢰성 강조
정책자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포장된 사업계획서보다 기업의 신용과 안정성 중시 · 자금 승인 시에는 기본적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력이 약할 때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 사업계획서는 소요자금, 자금운용계획, 상환계획 등 자금흐름과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작성 · 사업계획서 평가 시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를 중요시함으로서 매출처, 매입처, 관계회사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신용도를 향상
정부출연 및 평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기술의 경쟁력, 시장성, 사업화 기능성 위주로 작성 · 사업 성공을 위한 기술의 명확한 비교우위 차별성과 독창성이 확보된 내용을 기술 · 기술개발 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중 기술과 관련된 사항 작성 · 기존 기술의 비교, 국내·외 경쟁기술의 현황, 차별성 기술경쟁 우위성 등 입증에 중점 ·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소유가 아닌 개인의 소유로 된 경우는 기업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이 평가받는 데 유리함

[사업계획서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기업체 현황	회사개요, 기업 연혁, 창업동기 및 기대효과,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계획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도, 조직 및 인력의 특징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주주 현황), 관계회사 내용, 종업원 현황/고용계획, 교육훈련 현황 및 계획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기업 현황과 추진 사업실태 파악, 파악된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
해결방안 수립	분석결과에 대한 대책 수립과 계획 수립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계획	제품(상품)의 내용, 제품(상품)아이템 선정 및 사업전망, 기술 현황, 기술개발투자 현황 및 계획
생산 및 시설계획	생산 및 시설 현황, 생산공정, 원부자재 및 사용계획조달, 시설투자계획
시장성 및 판매계획	관련 산업의 최근 상황, 동업계 및 경쟁회사 현황, 판매 현황, 시장 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전망, 연도별 판매계획 및 마케팅전략
재무 계획	재무 현황, 재무 추정, 향후 수익전망
자금운용 조달계획	소요자금, 조달계획, 연도별 증자 및 차입계획, 자금 조달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특정분야별 계획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계획, 자금조달, 기술개발 사업계획, 시설 근대화 및 공정개선계획
첨부서류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결산서류, 경영진, 기술진이력서, 지식재산권 및 신기술(NET) 보유관계 증빙서류, 기타 필요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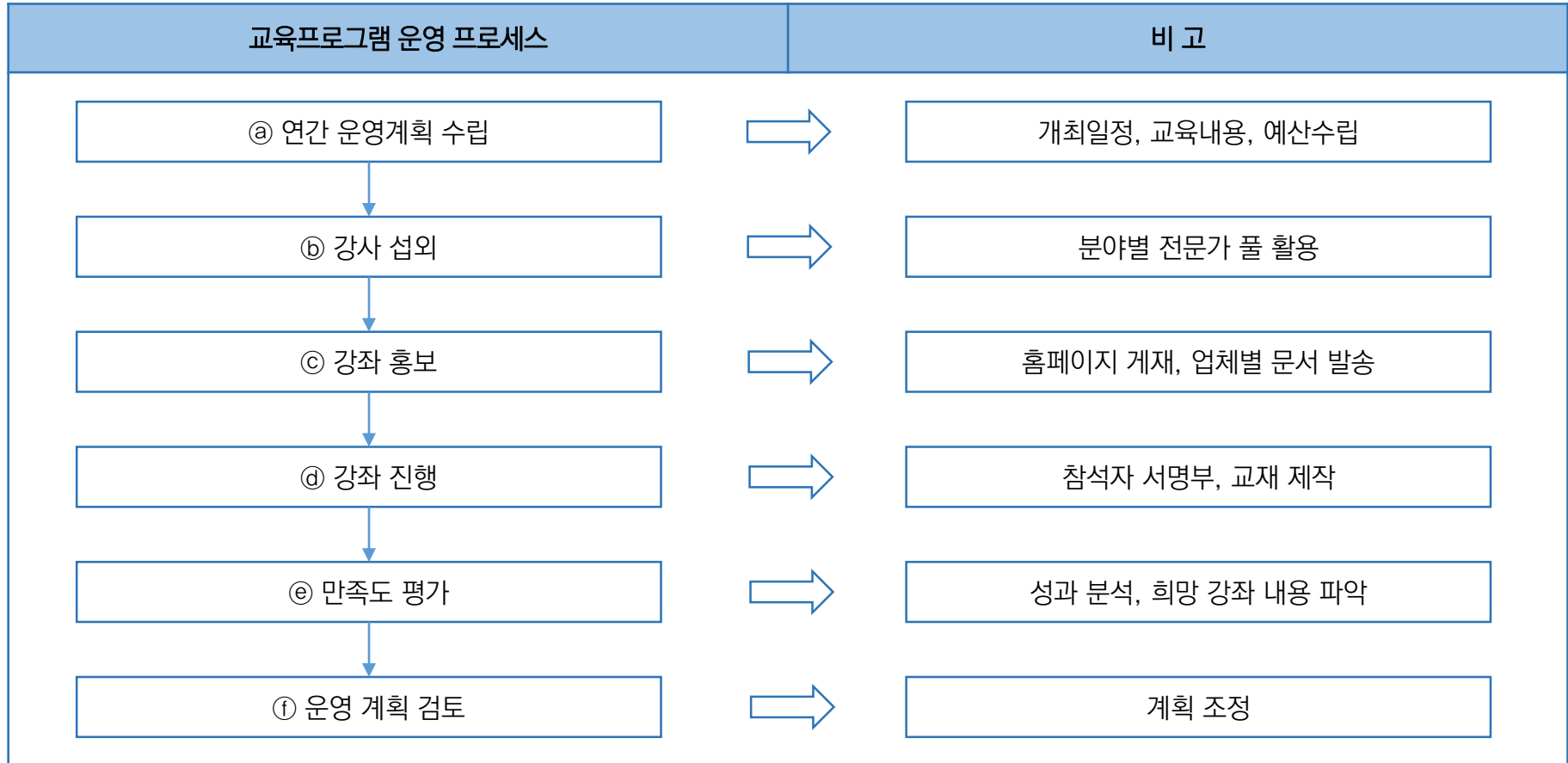
3) 교육프로그램

- 기업에게 필요한 교육은 센터의 본질적 기능이며 사업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 꼭 필요한 부분임.
- 전체기업에게 해당되는 공통교육, 창업단계별 수요교육,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교육, 기술특화 교육 등 기업별 진단을 통하여 맞춤 교육의 설계 노력 필요
-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이론형, 실습형, 팀빌딩형, 토론행, 발표형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운영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분야별	주요 내용
전략	비즈니스 모델, 경쟁전략, 사업계획 수립
HR	성장 단계별 인적자원 구축, 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성장관리 차원의 기업,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
투자	투자이해, 투자프로세스 및 계약, 투자IR자료 작성, IR발표 등
기술	센터별 특화 기술분야 동향 및 세미나, 시대적 요구 산업 및 기술이해(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글로벌	무역이해 및 실무, FTA이해 및 활용전략, 국가별 비즈니스 이슈, 국가별 인허가 등
정책	산업 및 정책 트렌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이해 및 활용
재무회계	자금조달(지원금, 투자, 융자 등)전략, 재무제표의 이해와 전략, 세법
운영관리	성장프로세스 관리, 법률(인사, 노무, 무역, 공정거래법 등)
혁신	지식재산권 활용, 권리 보호, 기술이전, 라이선싱
자기계발	리더십, 위기관리, 도전정신, 균형감각

[교육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교육계획 수립은 시행시기에 따라 교육내용을 정하기도 하지만 교육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말, 연초에 1년간의 교육 과정을 수립해 두는 것이 전문강사 섭외나 예산 등의 관리에 효과적임

㉢강사 섭외

-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하여 교육 분야별 검증된 강사를 섭외하여 커리큘럼 및 교수방법 등 사전 협의

㉣강좌 홍보

- 교육일정, 교육내용, 강사 등이 정해지면 홈페이지와 문서를 통해 사전에 입주기업에 교육 실시 계획을 공지
-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동아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만족도 평가

- 교육 시행 후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추후 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활용

㉦운영계획 검토

- 연초에 계획된 교육 운영계획은 만족도 평가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 교육 계획을 수정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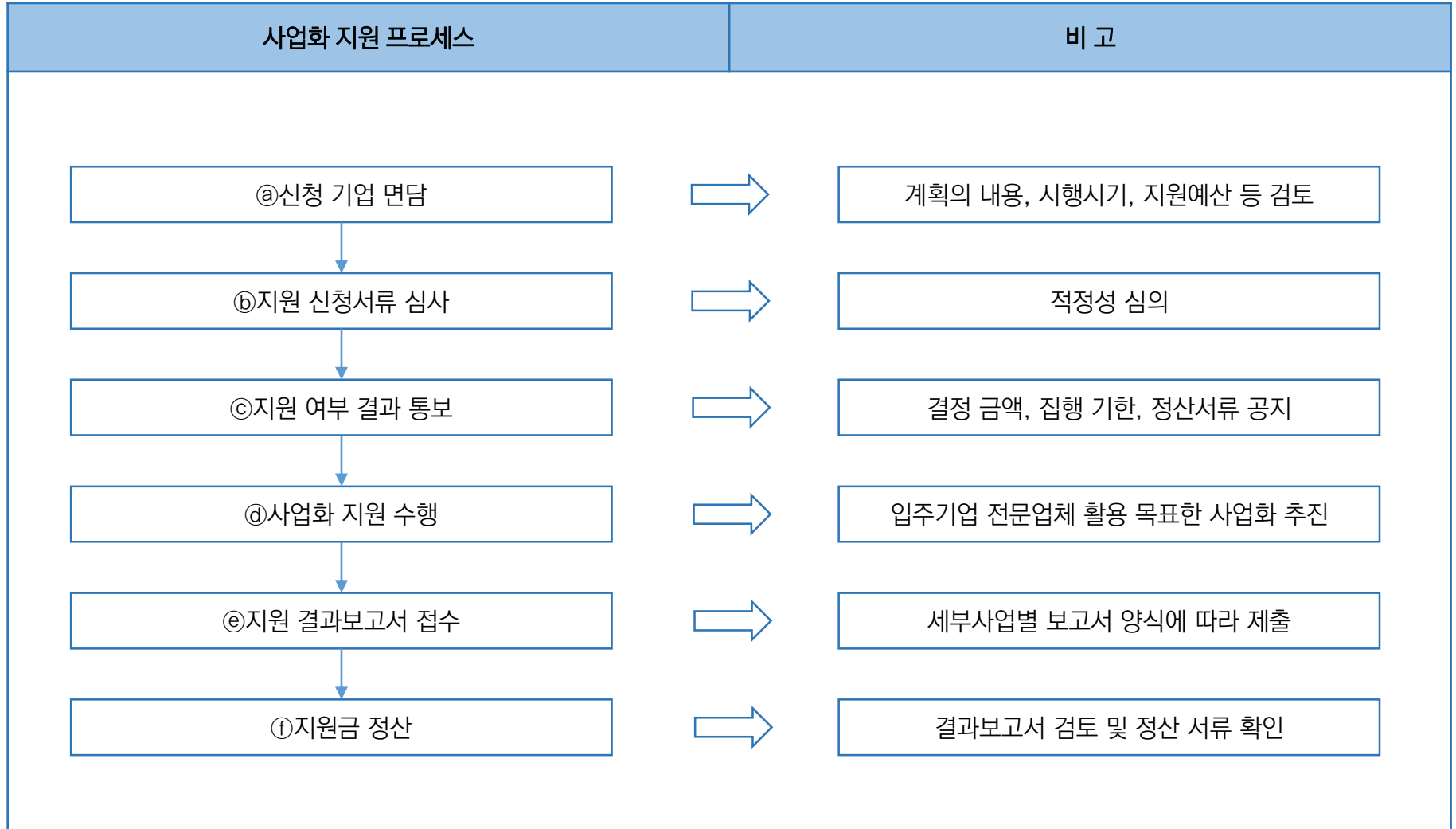
4) 사업화 지원 관리

- 입주기업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사업계획서, BM, 투자, 회계, 노무 등)외 기업별로 상이한 창업단계, 기술수준, 업종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화 분야를 지원
- 신청자격은 지원내용별로 기준을 정하되 사업마다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지원한도를 참고
- 신청자격을 입주 중인 모든 기업으로 하기 보다는 사업화 의지가 높고 성장역량이 갖추어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

분야	세부 사업별
경 영 마케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인증 <input type="checkbox"/> 경영혁신형 기업 <input type="checkbox"/> 이노비즈 인증 <input type="checkbox"/> 경영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수출상담회 참가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제작 <input type="checkbox"/> 국내.외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통번역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광고.홍보물 제작 <input type="checkbox"/> 홍보 영상 제작 <input type="checkbox"/> IR
기 술	<input type="checkbox"/> 지식재산권 획득 <input type="checkbox"/> 규격·제품 인증 <input type="checkbox"/> 애로기술지도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개발 <input type="checkbox"/> 연구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설치 <input type="checkbox"/> 기술 라이선싱 <input type="checkbox"/> 해외 인증 <input type="checkbox"/> 품질보증제도(Q마크) <input type="checkbox"/> 신기술 인증(NET) <input type="checkbox"/> 신기술 제품 인증(NEP) <input type="checkbox"/> 전자파 환경 인증(EMC) <input type="checkbox"/> S마크 인증 <input type="checkbox"/> K마크 인증 <input type="checkbox"/> 식품 HACCP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input type="checkbox"/>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인증 <input type="checkbox"/> ISO 인증 <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제품 평가 인증 <input type="checkbox"/> 품질경쟁력 우수 인증 <input type="checkbox"/> 보건제품품질 인증 <input type="checkbox"/>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input type="checkbox"/> 환경표지제도 <input type="checkbox"/> 친환경건축물 인증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인증 <input type="checkbox"/> 소방기계기구 우수품질 인증 등
시제품	<input type="checkbox"/> 시금형 제작 <input type="checkbox"/> 시제품 제작 <input type="checkbox"/> 성능실험비용

[사업화 지원 프로세스]



㉠신청기업 면담

- 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업과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계획의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효과와 타당성 검토 및 센터의 가용한 예산을 검토

㉢지원 신청서류 심사

- 사전 면담을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된 서류는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지원 여부 심사 기준]

항 목	내 용
관련성	사업분야와의 관련성 여부
시기적절성	사업 진행상황과의 시기적 적절성 여부
적극성	수행하려는 대표자의 의지 정도
경제성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활용성	수행 완료 후 성과 창출을 위한 계속 계획 수립 여부
수행능력	수행기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확보 여부 수행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 경력, 실적 보유 여부

㉣지원여부 결과 통보

- 심의한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며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금액과 집행 기한, 완료 후 결과보고 서류를 공지

㉠사업화 지원 수행

- 기업은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기간 연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완료 기간 경과 이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사유서와 함께 문서로 제출

㉔지원 결과보고서 접수

- 기업은 사업 종료 후 사업별 제출양식에 따라 지원 결과보고서를 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

㉕지원금 정산

- 센터는 기업이 제출한 지원 결과보고서가 성공적이라고 판정되면 정산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정산
- 지원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화 지원 실적 관리 항목]

구분	내용
시행일자	사업이 실제 수행된 기간
지원일자	정산 일자
지원분야	분야별, 세부사업별 구분
수행내용	구체적인 수행 내용 : 수행목적, 수행범위, 수행방법, 내용
지원금액	총 비용 및 센터 지원금
수행기관	용역 수행기관 정보
지원결과	수행 결과자료 및 보고서

5) 멘토링 등 전문가 연계 지원

- 입주기업의 사업 진행과정 중 문제해결 방향, 성장전략, 자금조달 등의 당면과제 및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창업 경험과 경영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 및 자문을 통하여 해결 지원함.
- 전문가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창업자의 잠재력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기술 등이 요구됨
- 전문가의 해당 분야의 이력을 확인하여 입주기업과 베스트 매칭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전문가 연계 지원방식은 멘토링, 코칭, 컨설팅 등 기업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함
- 전문가POOL을 구축하여 활용하며,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반영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하여 활용 필요

[전문가 연계 유형 및 기능]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멘티(mentee: 멘토링을 받는 사람)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활동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전문가집단의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시 중심의 보고서로 명확함. - 주로 컨설팅회사가 팀을 이루어서 하며, 수행이력 확인 필요하며, 멘토링 보다는 비용이 높음.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활동. - 창업자 역량의 기반이 될 때 단기적인 성과를 원하는 창업자 상황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음.

6) 네트워크

- 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비즈니스 플레이어들과의 상호정보 교류 및 공유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의 창업생태계를 조성
- 특히, 입주 및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하여 기업간 융복합, 선후배의 창업노하우 전수, 센터와 기업간 토론 및 협의의 기회 제공
- 각 센터의 소속기관의 산학자원과 연결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네트워크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 혁신 자원의 교류 및 상생협력문화 마련이 필요
- 입주기업과 투자기관의 교류장소를 마련하여 사업아이디어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투자로 연결되기 위한 물리적 환경과 정기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중요

[국내 창업지원기관의 다양한 네트워크 사례]

<p>D. PARTY (디캠프 : 은행권청년창업재단)</p>		<p>- 디파티는 스타트업계 대표 네트워킹 파티로 실제 기업간 협업 및 투자, M&A 등 활발한 사업적 교류가 이루어짐. 주요 산업별, 주제별로 2개월마다 한번씩 개최</p>
<p>허브네트워킹데이 (서울 창업허브)</p>		<p>- 스타트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이해관계자들이 차, 다과,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유익하고 자율적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아이디어, 투자, 교육 등 스타트업 정보 공유 문화 조성</p>
<p>SHALE THE NETWORKING (MARU180)</p>		<p>- 스타트업 누구나 한달에 한번 모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장 마련</p>

7) 기업별 성과 관리

- 기업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비교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차기 사업운영 계획에 반영
-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기업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입주 당시 기업의 실태분석과 입주기간 동안의 매출, 인원, 지식재산권, 인증, 정부정책사업, 자금조달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현황을 최소한 1년 단위로 파악하고 성과자료를 관리
- 성과자료는 기업별로 편철·관리하여 업체별 지원 실적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함
- 문서자료는 입주 당시와 입주 후로 구분하여 관리

[성과자료 관리문서]

구분	관리 문서	비고
입주 시	입주신청서	
	입주 시 발표자료	
	재무제표 또는 매출확인서	입주 직전 연도, 입주 직전 분기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 제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기업 제외
	지식재산권 사본	인증사항 포함
	직원 현황	
입주 후	재무제표	입주기간 중 매년 관리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인증서	
	정책사업 및 지원제도 활용 실적	
	자금조달 실적	
	직원 현황	
	전시회 참가 실적	
	언론 홍보자료	
	사업진행도평가자료	
	기업지원 실적 등 기타 자료	
졸업 후	매출, 고용 실적	졸업 후 3년간 관리

다. 졸업·퇴거 관리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근거하여 기업의 졸업과 퇴거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음

[졸업·퇴거 기준]

구분	기준	근거
졸업	1.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 2.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서 3년이 경과된 경우 ※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 28조 참고 3. 창업보육센터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 제8호 제28조 제32조
퇴거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기간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 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 제11호 제31조

1) 졸업

-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에서 졸업한 기업
-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업 추진계획이 달성되어 자립화 기반이 구축되어 졌을 때 졸업 신청
- 기업은 졸업 예정일 30일 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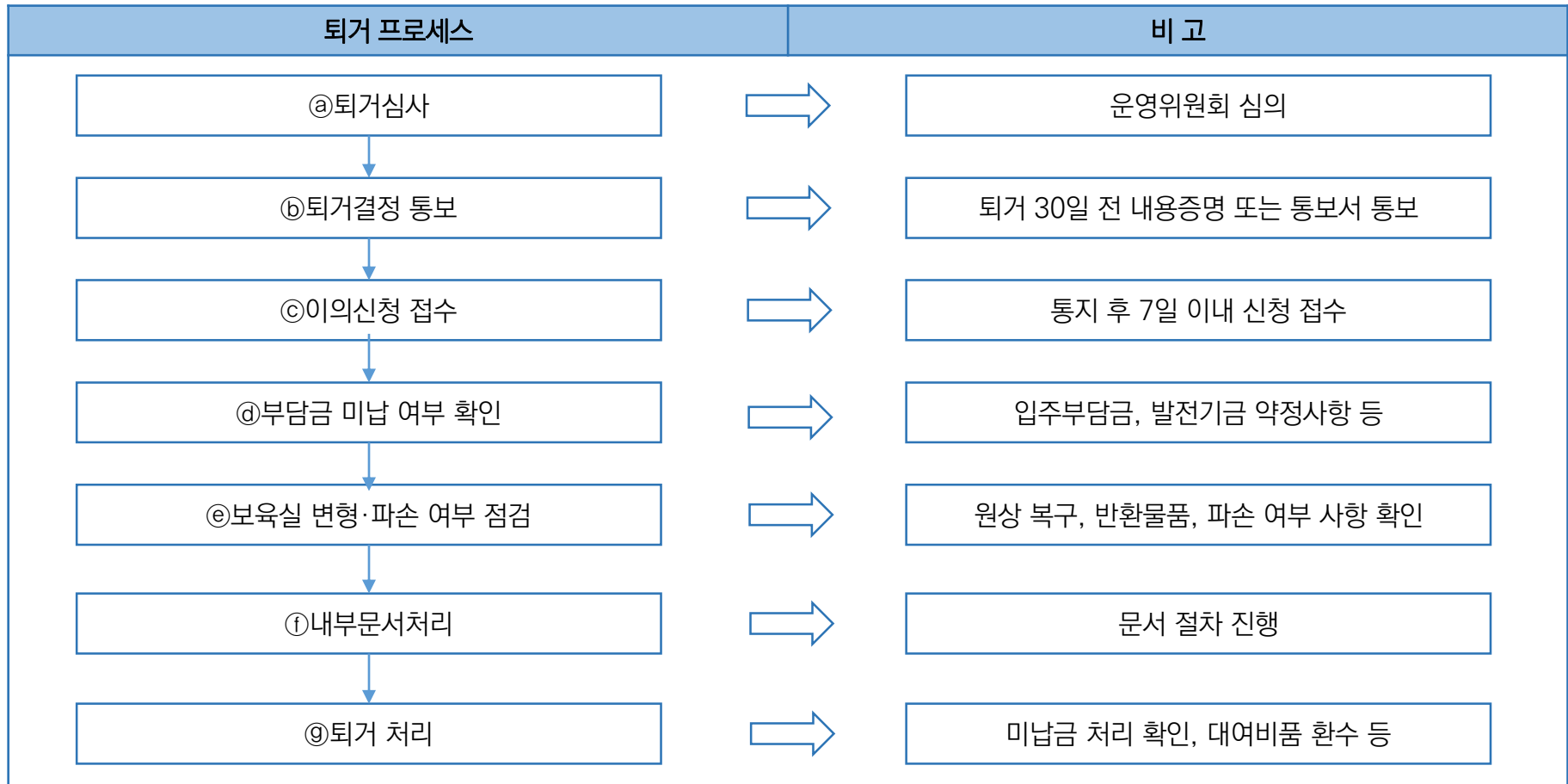
[졸업신청 처리 절차]

졸업 프로세스		비고
계약 만기 예정 통보	⇒	만기 6개월에서 40일 전 계약 갱신 여부 요청
↓		
졸업신청서 접수	⇒	졸업예정일 확인, 이전할 주소 확인
↓		
졸업 심사계획 수립	⇒	운영(심사)위원, 심사일정, 심사기준 등
↓		
졸업심사	⇒	추진계획대비 달성 및 자립화, 졸업유형 결정
↓		
보육부담금 미납 여부 확인 보육실 변형·손괴 여부 점검	⇒	입주부담금·발전기금 등 확인 원상복구, 반환물품, 손괴 여부 사항 확인
↓		
내부문서 처리 및 졸업승인 통보	⇒	문서절차 및 졸업절차 수행
↓		
보육실 퇴거	⇒	졸업 확인

2) 퇴거

- 입주기업의 퇴거는 비정상적인 입주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사업진행도 평가결과 ‘미흡’ 판정을 받았거나 입주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퇴거를 결정할 수 있음

[퇴거 처리 절차]



㉠퇴거 심사

- 기업에 퇴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퇴거에 대한 심의 절차를 논의

㉢퇴거결정 통보

-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퇴거가 의결되면 센터는 퇴거 명령일을 확정된 뒤 퇴거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통보

㉣이의신청 접수

- 퇴거결정 통보 후 기업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퇴거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퇴거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자체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퇴거결정 여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

㉤부담금 미납 여부와 보육실 변형·손괴 여부 점검

- 기업의 입주부담금 미납 여부와 최근 사용일까지의 비용 및 보육실 변형 또는 손괴 여부를 점검하고 원상 복구 사항에 대해 합의
- 변형 및 손괴에 대한 원상복구는 입주계약서에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가능함에 따라 입주계약서 체크하여야 함

㉠ 퇴거 처리

- 기업부담금과 시설 원상 복구가 완료되면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통보한 퇴거일자에 따라 보육실에서 퇴거(센터 확인)
- 퇴거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거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경과된 날로부터 무단점유에 해당됨. 일정 기간 퇴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전 화해 또는 명도소송 절차에 의해 퇴거 후속조치 대책을 수립
 - 제소전 화해 : 소송 중의 화해가 아닌 소를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
 - 명도소송 :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처리기간이 보통 4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

3) 졸업기업 사후관리

-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서는 졸업기업에 대해 졸업 후 3년 동안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의 성격은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년 매출실적과 고용 현황 같은 운영성과를 파악
- 졸업기업의 지속사업 모니터링을 위하여 각종 지원 인프라를 최대한 이용하여 지원하며 각 센터의 입주기업 지원시스템을 적용, 졸업 후 3년까지 사후관리 시스템을 적용 지원
- 자문위원, 창업 관련 컨설팅기업 및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입주/졸업기업 세미나 및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각종 기업역량 강화 및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반영
- 반기별 사업진행 성과분석을 통하여 졸업기업의 운영성과를 점검 및 관리
- 전문매니저는 졸업기업에 대해 지원 사항을 바탕으로 유선, 이메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정기적으로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간의 교류회를 개최

<관련근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정의)

8.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퇴거)

-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2조(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자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입주·졸업기업 관리의 범위와 종류

관리범위	관리의 종류	입주	졸업 이후
모집·선발	제출양식, 심사평가서류	○	○
계약사항 및 업체 현황	입주신청사업계획서	○	-
	입주계약	○	-
	입주기간	○	-
	기업 현황 변경	○	○
	창업보육료 및 관리비	○	-
평가	사업계획서	○	-
	사업진행도	○	○
사업지원	사업화 지원 관리	○	○
	지원성과	○	○
	경영·기술교육	○	-
	기업별 성과자료 관리	○	○
경영실적	매출 현황	○	○
	종업원 변동 현황	○	○
	지식재산권 현황	○	○
	인증 현황	○	○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감독 및 지원을 위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보육센터의 역량제고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확장건립비(이하 “설립비”라 한다),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입주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8.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9. “보조금”이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센터의 건립, 설비 구입, 운영비, 보육역량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10. “창업보육 부담금”이란 보육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 서비스의 수취 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11.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12. “특화”란 당해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 12의2. “특화 보육센터”라 함은 특화분야 또는 장관이 정한 보육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보육센터 전체 입주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약에 따라 전체 보육실 면적 중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 해당 입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보육센터를 말한다.
13. “공실률”이란 지정된 보육센터의 총 보육실 면적 대비 미입주 보육실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13의2. “보육실”이란 보육센터가 창업보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육공간으로 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보육공간 또는 입주기업들을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회의실, 기자재실, 공용생산실 등)을 말한다.

- 13의3.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이란 하나의 공간에 다수의 (예비)창업자를 보육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간으로 창업자간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 13의4. “지원시설”이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장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 13의5. “연면적”이란 보육센터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
- 13의6. “전용면적”이란 보육실 면적과 지원시설 면적의 합을 말한다.
- 13의7. “공용면적”이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면적을 말한다.(단, 주차장은 제외한다.)
- 14. “개소일”이란 신규 설립·확장건립비를 지원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보육센터를 신규 개소하거나 보육실 확장건립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 15. 법 제6조 제1항제1호 나목의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란 보육센터 건물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6. “학생창업공간”이란 보육센터가 대학(원) 재학생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면적의 일정부분을 5명 이상의 대학(원) 재학생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 17.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자 자율의 원칙) 입주자 선정기준·입주계약·입주기간·입주면적·보육부담금·졸업기준·퇴거기준 등 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2 장 창업보육센터 설립지원

제1절 창업보육센터 지정

제4조(지정공고) ① 장관은 사업자 지정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지정요건, 신청기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창업보육 인프라 구축 등의 창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모 외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장관이 지정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장관은 사업자 지정요건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① 영 별표1 제7호에서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창업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3. 창업투자회사 등 법인, 기관, 기업체 등에서 투자 또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자
4. 변리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벤처기업 등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사업자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6조(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4조의 지정공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심사평점 기준 및 제3항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창업보육사업자 지정 및 통보) ①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6조제2항에 의거 추천한 자가 법 제6조제1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장관은 제1항의 사업자 지정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 ③ 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창업보육 실시에 관한 실행계획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지정서 교부) 장관은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별표2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이 때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와 운영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표2의 지정서에 운영자를 사업자와 별도로 표기한다.

제2절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제9조(지원사업 공고)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확장건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청자격, 신청요건, 신청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관은 창업보육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모 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설립비 지원) ①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보육센터 설립비 지원을 사업자당 소요자금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 또는 확장건립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대응투자분은 현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해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설립 또는 확장 건립하는 경우에는 현물투자분을 대응투자분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현물투자금액은 기준시가·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며, 총 대응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비용
2. 보육센터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개소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육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설립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보육센터를 15년 이상 운영할 것을 확약한 사업자에 대해 설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최소 의무운영기간은 개소일로부터 15년으로 본다.

제11조(운영비 지원)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소 이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당해연도의 지원 실적 및 성과 등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육센터의 운영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센터 개소 이전이라도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센터 매니저의 인건비 및 성과인센티브
2. 보육시설의 유지·관리비
3. 입주기업 교육 및 컨설팅 비용
4. 세미나 개최 등 각종행사 관련 경비
5. 기타 경상 경비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보육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배정되면 속히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육역량강화 지원 등) ① 장관은 보육센터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성과확산 등의 창업보육 기반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특화 보육센터 활성화 및 특화분야 입주자 지원을 위해 설립비 또는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의 지원규모, 지원한도, 보조비율 및 용도를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에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자격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 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를 위해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 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3. 기타 사업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평가 및 주관기관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② 평가위원회는 제16조의 평가위원단을 활용하여 구성·운영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등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선정결과 및 협약안내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장관은 주관기관 선정 후 사업포기 등으로 잔여 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차순위 사업자를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평가위원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신청하거나 추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 · 경영전문가
 6. 제5호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
 7.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위원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위원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 · 불공정 평가위원으로 판명된 자
 5. 기타 평가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단에 등록된 위원이 평가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약, 보조금 관리 등) 주관기관에 대한 협약의 체결 · 변경 · 해약, 보조금의 집행 · 정산 · 관리, 지원사업의 사업계획변경 · 진도보고 · 점검 · 평가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장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자 지원 등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제18조(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 신고) ① 사업자는 창업보육사업계획서(제7조제3항의 의한 실행계획서를 포함한다.)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이 창업보육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창업보육사업계획의 변경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총 사업비의 축소 또는 확대
 2. 기자재구입 내용의 변경
 3. 보육 면적(센터 연면적 및 보육실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
 4. 사업장의 위치변경
 5. 보육센터장 또는 매니저의 변동
 6.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의 변경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창업보육사업자)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전담 조직의 운영, 기자재의 활용, 창업보육 1:1 전담교수·연구원 및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경영·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입주대상의 심사·선정, 보육센터 운영성과 평가, 입주자 기술·경영 애로해소 지원 등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계자 및 소속기관 임·직원(교수·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센터장) ① 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 ② 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되, 그 기간은 사업자의 내규로 정한다.
- ③ 사업자는 센터장이 교수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업시수배정, 연구실적 산정 등에 있어 입주기업 보육성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매니저)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

1.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학사학위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
5.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③ 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장관은 매니저를 보육센터 근무경력과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등급을 분류하여 매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속 매니저의 결원 발생 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매니저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선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전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주임)매니저 : 보육센터 총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자

제22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의 보육센터 운영)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제 23조에 의거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보육센터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센터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공단이사장은 소속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등 필요한 제반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문 운영기관의 설립 및 위탁) 사업자는 보육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운영사항 등의 보고) ① 보육센터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로 업무운영상황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센터는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비아이넷” 이라 한다)을 통해 업무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분쟁·소송 등 보육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① 장관은 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경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는 직전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규칙 제17조 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때를 말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의 경영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센터장 및 매니저의 장기근무체계 및 실적
2. 장애인기업 입주여부
3. 부실운영 등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여부
4.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 점검·평가 결과
5. 기타 장관이 가·감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선정 및 관리 · 지원

제26조(입주대상자)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영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2조에 따른 보육센터 또는 투자전문형으로 지정된 보육센터(TIPS)인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 · 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9조(창업보육부담금 등)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시설 및 장비 사용료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계약조건은 입주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비의 면제 또는 시가 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
2. 보유 기술을 입주기업에게 이전한 경우
3.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조건은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입주기업지원)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입주기업의 졸업 및 퇴거

제31조(퇴거)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퇴거에 따른 절차 및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32조(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자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하여야한다.

제4장 창업보육센터 사후관리

제33조(창업보육센터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창업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 관계자, 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장 및 지역 금융기관 임원 등으로 구성된 창업보육센터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권역별로 보육센터장, 대·중소기업, 유통전문기업 및 제1항의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보육센터의 반기별 업무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4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장관은 사업자가 당초 지정목적 등을 위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주의촉구, 경고, 지원중단, 지정취소 및 지원금 회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주의촉구 또는 경고는 관리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사업별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지원사업별 운영지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기관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사업별 운영지침을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사업추진 보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의촉구 또는 경고,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명령 또는 처분, 보육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추진체계

제36조(관리기관) 장관은 보육센터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보육센터 경영평가, 주관기관 선정 평가 등 진행 시 ‘평가위원회’ 참여
2. 관할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기타 보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7조(전문기관) 장관은 보육센터 역량 제고 및 지원사업의 관리를 위해 (사)한국창업보육협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 제32조제 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사업계획서의 접수, 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격검토, 신용조회 등
3.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4. 지원사업 협약체결, 보조금 지급 및 관리, 협약변경 사항의 승인
5. 정산금 회수, 보조금 관리 및 사용

6. 지원사업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7. 보육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성과활용 등을 위한 사후관리
8. 보육센터 보육역량 강화 지원
9. 비아이넷 운영 및 관리, 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
10. 창업보육 전문인력 양성, 창업보육 성과확산 등 창업보육 기반구축
11. 기타 보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8조(주관기관) ① 제9조의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중 또는 수행한 보육센터를 말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지원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5. 진도보고서, 중간·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제출
6.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요구 등의 성실한 대응
7. 지원사업의 성과조사, 이력관리 등의 사후관리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②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지원사업별 공고 또는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39조(비아이넷 관리) ① 장관은 비아이넷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센터의 운영현황 및 입주자와 졸업기업 관련 자료 입력 또는 수정을 위해 비아이넷을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 ③ 관리기관의 장은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를 매 반기 말에 점검·평가한다.

제40조(인센티브 지원) 장관은 창업보육의 성과가 우수한 보육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포상 등 각종 포상 실시
2. 센터장 및 매니저 해외연수 지원
3. 센터장 및 매니저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지급

제41조(이의신청) ①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자 지정 결과
2. 제15조에 따른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
3. 제17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및 지원사업 평가결과
4. 제34조에 따른 제재 및 지원금 회수

- ② 이의신청은 사안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 자체검토를 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육센터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창업보육센터 운영·관리, 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유지의무) ①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이 창업보육센터 지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 창업보육센터 지정 신청기관, 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및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
3. 평가위원회 회의록
4. 기타 장관이 비밀유지 의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및 전문기관 소속직원 등은 창업보육센터의 지정·관리 및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한다.

제44조(지도·감독) 장관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운영)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사업별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지침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제4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 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 2021. 12월 개정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

본 자료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표준교재(3. 기술창업보육실무)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참고 문헌]

- 고혁진 외 (2019). 국내창업보육센터 운영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이우진 외(2017), 벤처창업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충남창업보육협의회(2021). 2020년도 충청남도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집
- Theodorakopoulos et al.,(2014) What Matters in business incubation? A literature review and a suggestion for situated theorizing,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